

統一政策資料 IX

西 獨 의 東 方 政 策

전남필



西独의 東方政策

目 次

序 言	1
第一章 東·西独分断現況	3
가. 東·西独政治概要	5
나. 東·西独政治, 軍事 및 經濟体制	9
(1) 政治体制	9
(2) 軍事体制	13
(3) 經濟体制	15
다. 美·蘇의 对西独政策	18
第二章 西独의 東方政策	23
가. 東方政策論	25
(1) 統一外交接近法	25
(2) 現實認定政策	29
(3) 緊張緩和政策	31
(4) 協商政策	34
(5) 歐洲第一主義	36
나. 東·西独接觸	37
(1) 社会, 文化的接觸	37
(2) 經濟的接觸	49
(3) 政治的接觸	55

다. 東方政策의 實際	77
(1) 独・蘇不可侵條約	77
(2) 「오벨・나이제」 国境線問題	85
(3) 統独論	87
第三章 結 言	95
가. 韓・独兩國의 統一与件比較	97
나. 問題点 및 对備策	101

본 논문에 기재된 내용은 당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

序 言

「7.4南北共同声明」을 시발점으로 앞으로 長期間에 걸쳐 南北 韓間에는 人道的, 非政治的 내지 政治的 接觸이 本格化될 것으로 豫想되며 우리 民族에게는 統一問題를 主体的으로 解決하여야 할 歷史的的使命이 부과되었다.

東·西獨은 戰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經濟的, 非政治的交流를 계속하여 왔으며 政治的 接觸도 1966年 基民黨-社民黨 大聯政期로 부터 비롯하여 1969年「브란트」首相의 執權을 契機로 本格化되어 現在 東·西獨間一般條約締結을 위하여 交涉을 展開하고 있다.

이와같이 東·西獨이 기타 戰後分斷國家와는 달리 本格的으로 接觸을 維持할수 있었던것은 여러가지 側面에서 考察할수 있겠으나 戰後 歐洲에 形成된 政治, 軍事, 經濟等 國際政治体制의 當然한 所産이라는 點을 注目할만 하다. 「브란트」西獨首相의 「東方政策」은 美·蘇을 비롯한 強大國의 「緊張緩和政策」과 「現狀凍結政策」등 戰後 歐洲政治의 추세와 步調를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歐洲冷戰期에 있어서도 때로는 本格的으로 때로는 간헐的으로 維持되어 왔던 東·西獨間經濟 및 非政治的交流는 東·西獨政治接觸의 基盤을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브란트」西獨首相의 東方政策概念속에는 對蘇政策을 비롯한 對東 歐圈政策과 對東獨政策 특히 統獨政策을 一괄적으로 包含하고 있다. 즉 對東獨政策뿐만 아니라 全東歐共產圈政策을 同時에 展開하여 緊張

緩和에 대한 國際的保障을 確保하고 있다.

「브란트」首相의 東方政策은 現實的 내지 短期的으로는 東·西獨
分斷의 固定化를 意味하나 異質的 政治, 社會, 文化體制下에 固着된
東·西獨의 統一은 이른바 「東·西獨」을 連結하는 「콤뮈니티」의
形成이 前提되지 않고는 不可能하다는 點에서 「브란트」首相의 우
회적 接近方法이 統獨을 위한 가장 合理的이며 또 가장 빠른 길
일지도 모른다.

才一章 東・西独分断現況

第一章 東·西獨分斷現況

가. 東·西獨의 政治概要

第二次世界大戰이 終了된 以後 27 個年이 經過하였다. 第二次世界大戰은 「아세아」地域에서 中國, 越南 및 韓半島와 西歐에서 獨逸 등 4 個의 分斷國家를 만들어내었다. 戰後 4 個分斷國은 國家統一을 위하여 各者의 獨特한 國內外與件 밑에서 國家總力을 集結하여 努力하여왔다. 다만 統一努力의 樣相과 統一可能性은 相異한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中國의 경우는 中國本土를 掌握한 中共의 圧倒的인 國內外政治的勢力에 의하여 「유엔」에서의 中國代表權이 自由中國으로 부터 中共으로 讓渡되는 結果를 初來하였으며 앞으로 自由中國의 國際政治上的 發言權은 極히 制約될 것이며 이것은 中國의 統一方向에 影響을 미칠 것으로 判斷된다.

現在 戰爭이 進行中인 越南의 統一問題는 우선 越南內部的 政治的 問題를 解決한 다음에 第二次의 問題가 된다. 1954 年 「제네바」 協定은 17 度線을 暫定的인 境界線으로 軍事行動을 中止하고, 越南의 政治的 問題를 1956 年 南北越南의 總選舉를 통하여 解決하도록 規定하였으나 越南에 「고·닌·다엌」政權樹立과 더불어 共產軍은 越南에서 「계릴라」戰을 展開하여 戰爭을 擴大시킴으로서 統一問題보다는 戰爭終結問題가 우선하고 있다. 美國과 越南의 對越南戰略은 共產軍의 17 度線以北으로의 撤退를 基礎로 하고 있지만 만일 「베트남」의 越南政治參與를 一部 認定하여 越南戰의 政治的 妥結이 이루어

질 경우 第二次의問題로서 「사이공」政府와 「하노이」政府간의 統一問題가 本格的으로 論議될 것이다.

獨逸은 國內外政治的의與件으로 인하여 戰後分斷 4個國中 가장 本格的으로 東·西獨接觸을 계속하여 왔을 뿐만아니라 現在 東·西獨間의 政治的妥結點을 發見하기 위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展開하고 있다. 이와같은 東·西獨接觸의 要因은 獨逸民族의 主体性を 이루고 있는 文化的側面, 歷史的側面 기타 여러側面에서 分析이 可能하겠지만 순수히 國內外政治的의觀點에서 본다면 첫째, 國內的側面에서 政治經濟, 軍事, 社會安定등 總力面에서 東·西獨은 相互勢力均衡狀態에 있기 때문이며, 둘째, 國際的側面에서 東·西獨에 勢力을 미치는 強大國의 現狀凍結政策이 作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判斷된다. 勿論 強大國의 現狀凍結政策의 이면에는 勢力均衡的의要因이 作用하고 있다. 國際關係에 있어서 勢力均衡狀態는 協商을 갖어온다.

自由主義와 社會主義라는 異質社會의 国力을 測定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點이 있지만 南北韓의 境遇에 있어서도 國內的側面에서 大體로 相互勢力均衡狀態에 있고 國際的側面에서도 美·中共, 美·蘇接近을 契機로 極東地域에 대하여 強大國은 現狀凍結政策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觀點에서 본다면 東·西獨과 韓半島의 統一問題는 類似性을 內包하고 있다.

東·西獨은 戰後 27個年이 經過하는 동안 相互相異한 政治體制로서 政治的安定을 이룩하고 있다. 西獨은 聯邦制의 立憲共和國으로서 聯邦을 構成하고 있는 10個州와 西伯林은 각각 獨自的인 州議

회와 州政府를 갖고 있으며 이 州議會와 政府의 上位에 聯邦議會와 聯邦政府가 있다. 1949年 5月 23日 施行된 基本法이 西伯林을 除外한 10個州에 適用되고 있다. 西獨의 國會는 聯邦上院과 聯邦下院으로 構成되어 있다. 聯邦上院議員은 各州의 人口比例에 따라 各州政府가 任命하며 現定員은 41名으로서 各州政府代表의 會議體의 性格을 갖고 있다.

聯邦下院은 定員 496名, 任期 4年이며, 이외에 西伯林選出議員 22名은 議決權을 갖고 있지 않다. 下院議員은 選挙區單位로 單純多數決과 比例代表制를 併用하여 選出된다. 1969年 9月 28日 實施된 總選舉에 따른 聯邦議會內의 各政黨勢力은 「그리스토」敎民主同盟, 同社會同盟(CDU CSU) 245, 社會民主黨(SPD) 224 및 自由民主黨(FDP) 27席이다. 社會民主黨은 1969年 9月 實施된 總選舉에서 第2政黨이 되었으나 第3政黨인 自由民主黨과의 聯立政府樹立에 성공하여 西獨政府樹立以來 20年만에 保守로 부터 革新政黨에로의 政權交差가 이루어졌다.

社會民主黨은 「라싸레」派의 全獨勞動協會와 「리브크레히트」 등의 獨逸勞動者協會聯盟이 1875年 「고다」大會에서 合同한 社會主義者勞動者黨을 母體로 한 政黨으로서 「나치」의 彈壓밑에 衰沒狀態에 있다가 戰後 1945年에 再建하여 1959年 「고메스 베르그」綱領採擇을 契機로 階級政黨의 立場을 버리고 國民政黨이 되었다. 1960年의 黨大會에서는 北大西洋條約機構內에서의 核武裝을 承認하고 1966年 12月 「그리스도」敎民主·同社會同盟과의 聯立政府에 參加하였

으며 1969年 10月 21日 다시 自由民主黨과 聯立政府를 樹立하여 對蘇·對「포란드」, 對東獨交涉를 主軸으로 東·西緊張緩和政策 및 東方政策을 積極的으로 推進하고 있다.

한편 東獨은 戰後 27年이 經過하는 동안 社會主義制度 밑에서 政治的安定을 維持해 오고 있다. 東獨은 形式上 複數政黨制度를 갖고 있지만 勞動者階級의 政黨(社會主義統一黨)이 主導權을 堅持하고 있는 東歐洲型人民民主主義國家로서 1960年 初代「월헤름·베그」大統領死亡後 大統領制를 廢止하고 國家評議會(議長 1, 副議長 6, 議員 16, 書記 1 各)가 最高執行機關으로서, 國家評議會는 人民議會(國會)로부터 勅令發令權을 委任받고 있다. 그리고 一院制의 人民議會는 司法, 立法, 行政 등 三權을 統括하는 最高議決機關으로 國家評議會議長, 內閣을 選出한다. 人民議會는 定員 500名으로서 任期는 4年이며 이중 66名은 東柏林代表로 議決權이 없다.

1967年 7月 2日 實施된 選舉에서 社會主義統一黨(SPD)이 支配的인 議席을 確保하였다. 社會主義統一黨은 1946年 4月 蘇聯占領地區와 柏林의 獨逸共產黨 및 獨逸社會民主黨이 合同하여 政黨을 結成하였 으며 現在 東獨의 唯一한 支配的政黨으로서 人民議會에서 66%의 絶對多數議席을 確保하고 東獨內에 200萬의 黨員을 保有하고 있다.

人民議회가 作成한 東獨의 新憲法草案은 1968年 4月 6日 國民投票를 통하여 確定되었다. 新憲法은 前文에서 이른바 「美帝國主義를 非難하는 異例的인 것으로서 舊憲法이 戰後의 社會主義秩序의 樹立에 重點을 두었던것에 反하여 國內의 社會主義建設의 進前에

부응하여 社会主义制度의 法的規定에 重点을 두고 있다. 独逸統一問題에 대하여 旧憲法은 「独逸은 分割할수 없는 民主的共和国」이라고 規定하고 있었던 것에 反하여 新憲法은 「民主主義와 社会主义의 基盤下에서 統一을 成就하기 위하여 2個의 独逸國家는 努力한다」(第 8條)라고 規定하므로써 「2個独逸國家」의 存在를 法的으로 明確히 하였다.

以上과 같이 東·西獨은 相異한 政治制度 밑에서 國內政治的安定을 維持하고 있는바 이 安定은 各々 民主, 共產兩陣營으로부터 政治的 軍事的 經濟的保障을 받음으로서 더욱 鞏固化되고 있다.

나. 東·西歐 政治, 軍事 및 經濟體制

(1) 政治體制

東·西獨은 現在 各기 主權을 回復하였지만 第二次世界大戰의 戰敗國의 立場에서 國際政治的影響力을 強力히 받고 있으며, 東·西獨을 주요한 國際政治勢力의 政策은 東·西獨의 統一政策遂行에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다. 이 觀點에서 볼때 韓半島의 境遇보다 東·西獨의 統一政策은 더욱더 많이 國際政治的影響力을 받고 있다. 東·西獨接觸 및 統一政策遂行과 國際政治勢力(美, 英, 仏, 蘇)과의 相 關關係는 첫째로 東·西獨은 雙方陣營과 政治, 軍事, 經濟的으로 各者 結合되어 勢力均衡을 維持하고 있다는 側面과 둘째로 이 勢力 均衡結果로 나타난 強大國의 現狀凍結政策은 逆으로 東·西獨의 政策方向을 制約하고 있다는 二元的側面에서 考察할수 있다.

第二次世界大戰의 戰勝國家로서 美, 英, 仏, 蘇 4大強國은 西獨과 東獨에게 広範圍한 主權要素를 移讓한 以後에도 계속 獨逸全體를 全歐洲平和秩序에 편입시킬 責任이 있는것으로 看做되고 있다. 이러한 目的으로 美, 英, 仏, 蘇는 聯合軍協定 및 占領軍法에 起因하는 權利의 一部를 留保하고 있다.

1952年 5月 26日字 獨逸條約은 美, 英, 仏三大國이 伯林 및 全獨逸問題에 關하여 지금까지 行使하여 왔거나 保持하고 있는 權利와 責任을 獨逸再統一과 平和條約 原則問題에 있어서도 留保한다」라고 規定하고 있으며, 1954年 3月 25日 東獨主權宣言中에서 蘇聯은 「4大強國協定에 의하여 蘇聯에 부여된 責任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機能을 留保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此外에도 1955年 9月 20日字 東獨・蘇聯間에 締結된 主權條約과 1964年 6月 12日字 蘇聯・東獨間 友好條約등은 「國際的協定에서 發生하는 東獨에 대한 蘇聯의 權利와 義務를 認定한다」고 規定함으로써 西方三大強國과 蘇聯은 東・西獨을 各자 政治的影嚮圈속에 넣고 있다.

뿐만아니라 4大戰勝國은 東・西獨에 대하여 各기 平和調整을 이 룩할 義務가 부과되어 있으며 東・西獨은 戰勝國의 獨逸政策目的의 達成을 위한 支援을 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獨逸條約第7條는 「再統一된 獨逸은 現西獨과 같이 自由民主主義憲法을 가지고, 獨逸 國境線의 最終的 劃定은 平和條約을 締結하기 위한 調整이 이루어 질때까지 延期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1955年 9月 20日字 東獨・蘇聯主權條約은 平和愛好民主國家로서의

獨逸統一을 위한 條約當事國의 共同努力과 協商에 의한 全獨逸의 平和的調整達成을 規定하고 있다. 1964年6月12日字 蘇聯·東獨友好條約은 「獨逸平和條約締結을 용이하게 하고 平和적이고 民主的 基盤下에서의 獨逸統一의 促進을 이룩함이 條約當事國의 所望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또 同條約第7條는 「두個의 主權獨逸國家가 存在하고 있다는 事實에 直面하여 하나의 平和, 民主統一獨逸國家의 創建은 兩主權獨逸國家間의 平等한 協商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수 있다」고 確認하였다. 이 以外에도 1967年3月15日字 東獨-和蘭友好條約, 同3月17日字 東獨·체코友好條約, 同5月18日字 東獨·헝가리友好條約등 一連의 東獨과 共産國間의 友好條約은 「獨逸平和는 두個의 主權獨逸國家의 存在 認定을 原則으로 하고 將次 하나의 平和統一國家는 協商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東·西獨은 각기 雙方同盟國들에 대하여 暴力拋棄政策을 遂行할 義務가 부과되므로써 戰勝國의 政治的影響을 받고 있다. 西獨은 獨逸條約第3條에서 「유엔」憲章原則과 歐洲理事會定款의 目的과 一致하는 政治를 施行할 義務가 있으며 「나토」會員國家로서 「나토」條約第1條에 따라 國際關係에 있어서 모든 暴力의 威脅이나 暴力使用을 抑制할 義務를 지니고 있다.

東獨도 또한 1955年9月20日字條約第2條에서 歐洲 및 全世界의 平和와 安全保障을 위하여 「유엔」原則과 合致하는 國際政治의 遂行을 淸명하였다. 그리고 1955年5月14日字 「바르샤바」條約當事國으로서 「유엔」憲章의 原則에 따라 暴力의 威脅과 行使를 抑制

하고 國際的紛爭을 平和的으로 解決한다고 宣言하였다.

4大聯合國은 이외에도 東·西獨問題에 관하여 각기 東·西獨과 協議할수 있는 條約上의 權利를 保有하고 있다. 獨逸條約第7條4項에 따라 西方3大強國은 權限行使와 關係가 있는 問題에 관하여 西獨과 協議할 權限이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나토」條約第3條와 西歐同盟條約第8章3項에 따라 條約當事國은 領土侵奪의 위기에 처하였거나 政治的自主성과 國家의 安全保障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相互協議할 義務가 부과되어 있다. 그리고 外務, 國防政策分野에 있어서 広範圍한 相互協議義務事項은 1963年1月22日字 獨逸條約에서도 明白하게 表現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1970年가을, 歐洲 共同體6個會員國 政府는 共同利害關係가 있는 政治的問題에 관하여 定期的으로 政治的協議를 할 義務를 지니게 되어 있다.

한편 東獨과 蘇聯은 1955年9月20日字 主權條約第2條第2項에 따라 兩國의 利害에 저촉되는 모든 重要한 國際的問題에 있어서 相互協議할 義務가 부과되어 있으며 「바르샤바」條約第3條에 따라 東獨과 同盟會員國 들은 그들의 共同利害에 저촉되는 모든 國際的問題에 있어서 相互協議하도록 되어 있다.

以上과 같이 東·西獨은 各者 東·西獨의 雙方同盟體와 政治的結合을 하므로써 兩個의 政治圈을 形成하였으며 歐洲는 政治的兩面體制로서 分열되어 對立된 狀態에 있다. 따라서 東·西獨間의 政治的對立은 單純히 東·西獨雙方間의 對立일뿐만아니라 東·西歐陣營間의 對立이란 結果로 나타난다. 이 陣營間의 政治的結合現狀은 地

理的隣接性 歐洲文化圏으로서의 歴史性등으로 歐洲國際關係에 있어서
첨예하게 反影되어 있음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2) 軍事体制

西獨과 東獨은 「나토」와 「바르샤바」軍事同盟체에 각각 偏入되
어 軍事的側面에서 西歐와 東歐에 각각 密接히 結合되어 있다.
따라서 東·西獨間의 軍事的對決은 곧 全東歐와 全西歐間의 軍事的
對決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現在 核武器를 中心으로한 東·西歐
間의 軍事的均衡은 全歐洲의 緊張緩和를 招來하고 이것은 結果的으
로 東·西獨間의 接近政策을 招來하게 된다.

1954年10月の 「파리」條約에서 西獨의 再軍備와 「나토」加盟이
決定됨에 따라 西獨은 1955年1月 西獨國防軍을 發足시켰다. 西獨
은 1956年7月 徵兵制를 施行하여 現在, 正規軍總兵力은 約
46萬6,000名에 이르고 있으며 國防豫算은 200億「마르크」를 上
廻하고 있다.

西獨은 1955年5月4日이래 「나토」會員國이며 「나토」는 逆으
로 相互協調와 軍事防衛機構로서 西獨의 軍事的安全保障을 責任지고
있다. 또 西獨은 西歐의 共同防衛에 대하여 一定한 기여를 할
義務가 있으며 모든 西獨國防軍의 戰鬥部隊는 西歐의 全般의防衛体
에 偏入되어 있다. 다만 西獨國防軍의 兵力水準은 西歐同盟의 規
定에 따라 制限을 받고 있으며 西獨은 이를 양해하고 있다. 西
獨은 原子 및 生化学武器의 生産과 기타 몇몇 武装体制를 拋棄한
것을 宣言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事項의 嚴守如否는 西歐同盟의

軍備監督國의 監査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西獨은 全般的으로 「나토」의 軍事政策을 遵守하여야 한다. 西獨은 「나토」의 會員國으로서 「나토」가 要求하는 固定된 軍事均衡을 維持하는데 協力하여야 하며, 이 軍事均衡下에 東·西歐間의 軍事的衝突을 克服하므로서 全歐洲의 平和를 鞏固히 하여야 하며 軍事的均衡을 위한 各國의 軍備制限을 위하여 항상 努力하여야 한다.

西獨은 緊張緩和政策을 추구함과 同時에 「나토」會員國間의 軍備負擔의 正當한 分배를 위하여 「歐洲主義」를 導入하여 成果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西歐政府의 東歐諸國에 대한 和解努力은 西獨 및 歐洲의 安全保障을 위한 軍事的均衡政策의 繼續的인 試圖이다. 獨蘇, 獨波不可侵條約은 歐洲緊張緩和을 위한 劃期的措施이다.

東獨은 西獨의 「나토」加入에 對抗하여 1955年 「바르샤바」條約機構에 加盟하였으며 1956年 人民警察을 人民軍으로 改編하여 國防省을 設置하였다. 1962年 徵兵制實施에 이어 1964년에는 蘇聯과 兩國間 相互援助條約(軍事同盟)을 締結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1957年 東獨駐留蘇聯軍의 地位協定을 締結하였다. 이 協定에 따라 東獨에는 陸上 20個師團, 戰術空軍 2個部隊, 約 35萬名의 蘇聯軍이 駐留하고 있다. 東獨은 正規軍總兵力 約 13萬名規模, 國防豫算은 約 67億「마르크」이다.

東獨의 「바르샤바」條約體制와의 堅固한 軍事的結合은 1968年 4月 6日字 東獨의 憲法에서 「社會主義的國際主義原則에 부합하도록 그 關係를 形成할 義務를 內包시키므로서 完壁하게 되었다. 「바

르샤바」協定은 中歐에 있어서 「나토」보다 本質적으로 더 強力한 兵力을 維持하고 있으며 그 兵力規模는 每年 防衛態勢를 強化하므로서 增強되어 왔다. 그리고 東獨의 兵力은 「바르샤바」協定の 軍事機構에 適合되어 있으며 會員國에 軍事的事態가 發生할 時期에는 「바르샤바」條約의 全加盟國이 東獨의 軍事部隊配置에 관하여 集團적으로 決定할 權限을 保有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歐洲地域은 兩大軍事陣營으로 明白히 分立對決狀態에서 軍事의 均衡을 維持하고 있다. 特히 東·西獨對決의 導火點이 되고 있는 西伯林의 軍事的保護는 美, 英, 仏, 西方三大強國의 義務로 되었으며 伯林에 있어서의 聯合國兵力의 維持는 1954年 10月 3日 西方 9個國會議을 통하여 合法化되었다. 伯林뿐만아니라 西歐同盟의 軍事的適用範圍는 歐洲에 局限되었지만 歐洲, 北美洲, 北大西洋 領域의 一部를 '카바' 하는 「나토」機構를 통하여 西歐의 軍事的 安全은 거의 完備한 段階에 이르고 있다. 이點은 韓·美·防衛條約과 美, 日安保條約의 二元的相互條約에 의한 三角防衛體制를 통하여 安保對策을 추구하고 있는 極東安保體制와는 중한 對照를 이루고 있다.

(3) 經濟體制

西獨과 東獨의 東·西歐體制에 대한 結合現狀은 政治, 軍事의 側面뿐만아니라 특히 經濟的側面에서도 如實히 나타나고 있다. 東·西獨間내지 東·西歐間 緊張緩和의 要因은 皮상적으로는 政治, 軍事的側面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其實은 무엇보다도 經濟的要因이 支配的

으로 作用하고 있음을 注目하여야 한다. 東·西歐經濟圈으로 分立된 現經濟障壁의 突破口를 發見하려는 經濟的必要性은 東·西歐緊張 해소의 要因을 形成하고 있다.

戰後 歐洲의 國際經濟動向은 東·西歐各者 經濟「뿌력」을 形成하기 위한 經濟統合過程이었다. 西歐經濟圈은 「石炭鉄鋼共同体」「歐洲經濟共同体」 및 「歐洲原子力共同体」의 形成을 契機로 1950年 頃부터 經濟的西歐統合이 具體化되기 始作하여 西獨, 「벨지움」, 仏蘭西, 伊太利, 「룩셈부르크」 和 西을 構成國으로 하는 歐洲共同市場의 構成으로 本格化되었다. 歐洲共同市場은 1962年1月1日 會員國間의 工產品大體輸入制限措置를 撤廢하므로써 歐洲經濟統合의 進一步를 이룩하였다. 勿論 會員國間에 技術的인 輸入制限措置問題를 完全히 解決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歐洲經濟統合의 全面的 實現으로서 關稅同盟을 形成하기까지는 아직 時日이 要望된다. 歐洲共同市場의 經濟的統合面에서 가장 進歩된 分野는 會員國間의 農產品自由移動을 規定한 共同農業市場의 組織이다. 歐洲共同市場은 共同体自体資金에 의한 共同農業政策資金調達을 1978年頃까지 實現하기로 合意하였다. 그리고 會員國의 一方的 經濟政策이 圈內他國에 伝播되어 影響을 미치는등 共同經濟政策의 追求面에서는 아직 歐洲共同市場의 經濟統合이 未備한 狀態에 있으나 1969年 「헤그」에서 開催된 歐洲共同市場 6個國首腦會議는 歐洲共同市場의 經濟 및 通貨聯盟의 段階的創設에 合意를 보았다.

歐洲共同市場은 民主主義制度를 가진 모든 歐洲國家에 開放政策을

取하여 英國, 「덴마크」, 「아이랜드」 및 「노웨이」의 同時加入이 實現되고 「歐洲自由通商地域」을 統合하였으며 「아프리카」地域 18 個國이 參與하는 歐洲以外地域經濟와 結合하여 방대한 自由貿易圈을 形成하고 있다. 歐洲共同市場은 基타 「유엔」 「유크타트」 및 「갓트」와 經濟的協同을 維持하고 있다.

한편 東獨은 蘇聯의 主導下에 있는 東歐經濟同盟體에 編入되어 있다. 東歐經濟同盟體인 東歐經濟相互援助會議(코메콘)은 1949年 1月 西歐의 「마셜·플랜」의 對抗機構로서 「모스크바」經濟會議에서 設立되어 1955年以來 社會主義陣營內의 國際分業을 促進하고 低開發國援助를 統制하고 있다. 「코메콘」은 蘇聯, 東獨 등 東歐 8 個國과 蒙古를 會員國으로한 東歐共產圈의 經濟統合機構이나 國立對外貿易機構間의 雙務協定으로 國際經濟問題를 處理하는 社會主義經濟體制의 特殊性和 蘇聯「루블」貨의 兌換性否足 및 會員國間의 經濟發展段階의 隔差로서 市場統合과 關稅同盟締結의 必要性 등은 稀薄한 狀態에 있다. 그러나 1970年 5月 10日부터 14日까지 「바르샤바」에서 開催된 第24次「코메콘」總會는 國際投資銀行設立에 同意하였다. 勞動의 國際的社會主義分業 即 生産의 專門化와 協業化를 實現시키기 위하여 借款과 融資를 公여하는데 合意를 畧으로서 東歐共產圈의 經濟統合을 促進시켰다.

東·西歐經濟圈에 각각 編入되어 있는 東·西獨經濟體制는 經濟大國으로서의 歐洲의 特殊性에 따라 國際經濟와 聯關되어 있으며 이러한 國際經濟秩序의 重要를 원하지 않는 國際政治勢力은 歐洲의

政治, 軍事, 經濟的安定을 要求하고 있다. 國際貿易上에서 西獨經濟는 輸出面에서 世界總輸出量의 10%, 輸入面에서 世界總輸入量의 8.8%를 각각 占有하고 있으며 東獨經濟는 輸出入面에서 각각 1.5%를 占有하고 있다. (1969年)

西獨의 對外貿易構造는 總輸出額의 46.8%를 「나토」國家에 輸出하고 歐洲共同市場에 25.6%를 輸出하였으며(1968年), 1960年以後 「歐洲自由通商地域」과 美國, 캐나다等地로 輸出地域을 擴張하여 왔다. 非同盟國에 對한 輸出入도 49.1%(1958年)를 占有하고 있다. 그리고 西獨은 「歐洲共同市場」 「歐洲自由通商地域」 및 美國에 總海外投資의 50—60%를 集中시키고 있다.

東獨의 對外貿易構造는 1960~1969年間 輸出量이 88% 增加하였으나 輸出地域構造는 東歐共產國에 集中되었으며 西獨을 包含한 西歐工業國에 對한 輸出은 20~22%를 占有하고 있으며 輸入原資材를 비롯하여 輸出入關係를 蘇聯에 致重하고 있다.

다. 美·蘇의 對西歐政策

東·西獨 및 東·西歐間의 政治, 經濟, 軍事의 均衡은 美·蘇를 中心으로 한 東西方強大國의 現狀凍結政策을 招來하였다. 25萬名의 西歐駐屯軍을 갖고 있는 美國은 減軍을 實現시키므로써 軍事費負擔을 經減시킬 必要性이 대두되었다. 戰後 蘇聯의 對西方進出을 封鎖시키기 위하여 西獨의 經濟再建을 支援하여 왔던 美國은 오늘날에는 美·蘇間戰爭위기의 감소로 오히려 歐洲共同市場을 中心으로한 西歐經濟와의 經濟的競爭狀態에 突入하고 있다. 따라서 西獨의 東

方政策과 이로 인한 西獨經濟와 東歐國經濟의 結合은 美國經濟의 對東歐經濟國進出에로의 先導的役割을 담당할 可能性이 있으며 한편 歐洲以外의 其他地域經濟에서 西歐經濟와의 競爭減少로 美國의 經濟力이 擴大되는 契機가 마련될 것이다.

다음으로 西獨의 東方政策추진의 이면에는 蘇聯의 西方政策과 相互不可分의 關係가 있다. 蘇聯은 우선 西獨의 先進經濟力을 利用하여 自國의 落後된 分野의 經濟開發을 促進시키려고 企圖하고 있다. 1972年4月7日 仮調印된 西獨-蘇聯間長期貿易經濟協調協定에 따라 蘇聯은 1972年末부터 20年間 520億 m^3 의 天然가스를 西獨에 供給하여야 하며 西獨은 이 가스供給用大型「파이프」150萬屯과 15億「마르크」의 長期借款을 蘇聯에 提供하게 되었다.

그리고 蘇聯은 軍事戰略的見地에서 中·蘇國境地帶와 歐洲地域의 兩面戰線의 維持를 원하지 않고 있다. 中·蘇國境地帶에는 44個師團의 蘇聯地上軍이 配置되어 있는바 이 兵力은 蘇聯全地上軍 160個師團의 1/4에 該當한다. 東歐駐屯蘇聯地上軍은 31個師團으로서 東獨에 만도 35萬名의 蘇聯軍이 駐屯하고 있다. 1966년부터 始作되는 蘇聯經濟開發 5個年計劃期間中 經濟成長率은 5.5%에 不過하였으나 國防費는 每年 增加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軍事費감소의 必要性에서도 蘇聯은 緊張이 高潮되었던 中·蘇國境地帶의 兵力을 強化하기 위하여 歐洲地域에서의 緊張緩和를 促進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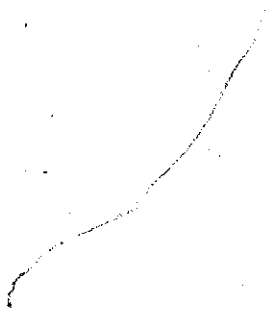
歐洲의 緊張을 緩和하기 위한 蘇聯의 動向은 獨·蘇條約의 締結

과 歐洲安全保障會議의 推進이라는 兩面에서 나타났다. 獨蘇不可侵條約의 締結 및 蘇聯의 對西獨接近政策은 1969年 西獨에 「브란트」政權의 樹立을 契機로 本格化되었다. 獨·蘇不可侵條約締結의 交渉은 1970年 8月 合意에 이르러 「브란트」西獨首相이 「모스크」를 訪問하여 同月 12日 「코시긴蘇聯首相間에 調印이 이루어졌으며 1972年 5月 17日 西獨議會의 批准으로 確定되었다. 1969年 12月 「모스크」에서 豫備交渉이 始作된 以來 近 3 個年만의 所産이다. 獨·蘇不可侵條約은 前文과 5 個條로 構成되는 條約本文書以外에 東西兩獨統一의 可能性을 表明한 「브란트」書簡과 西獨과 柏林間의 問題에 관한 美, 英, 仏, 蘇 4 大國의 權利를 再確認한 美, 英, 仏 三國에 대한 覚書등 付屬文書로 構成되어 있다. 條約은 前文에서 歐洲平和를 위한 兩國間의 協力을 盟誓하고 兩國間의 經濟, 科學技術, 文化協力の 増大를 強調하고 條約本文에서 (1) 歐洲現狀承認 (2) 現國境線의 尊重 (3) 武力不行使와 國境의 不可侵등을 規定하고 있다.

獨·蘇不可侵條約의 批准은 戰後 27 年間에 걸친 東·西冷戰狀態에 終止符를 찍는 劃期的事實로서 1970年假調印이 成立된 직후 8月 20日 「모스크」에서 開催된 「바르샤바」條約 機構政治諮問委員會는 平和共存原則에 立脚한 全歐洲國家間의 關係改善의 巨步라고 獨·蘇不可侵條約의 意味를 評價하고 있지만 同條約의 實質的意圖는 歐洲에서 美軍의 撤収를 促求하고 獨逸의 分斷을 固定化하여 東歐地域에서 蘇聯의 支配權을 確保하려는 저의가 있는것으로 判斷된다.

蘇聯은 이와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이미 1969年 3月 「부다페스트」에서 開催된 「바르샤바」條約機構首腦會議에서 歐洲安全保障會議의 開催을 提議하였다. 1970年 10月 「뽕뻬두」 仏蘭西大統領의 蘇聯訪問을 契機로 發表된 仏·蘇共同聲明은 「適切히 準備된 歐洲安保會議의 開催는 歐洲緊張緩和를 促進하는 것이며 仏·蘇兩國은 同會議의 開催를 위하여 努力할 用意가 있다」라고 宣言한 바 있다.

1970年 12月 3, 4兩日間 「부랴셀」에서 開催된 「나토」閣僚理事會(外相會議)는 歐洲安保會議 開催의 可能性을 檢討하기 위하여 關係諸國의 會談을 開催할 用意가 있다고 宣言하였으며 1972年 5月 30~31日 「본」에서 開催된 「나토」閣僚理事會는 1973年中 歐洲安保會議를 開催할것에 合意하였다.



才二章 西独의東方政策

以 研 究 學 生 的 研 究 課 題

才二章 西独의 東方政策

가. 東方政策論

(1) 統一外交接近法

1969年 10月 21日 「빌리·브란트」 西独首相就任은 西独国内 政治에 있어서 1966年 大聯政의 樹立, 그리고 國際關係에 있어서 1970年 8月 12日, 独, 蘇不可侵條約의 締結과 더불어 1960年代부터 1970年代까지의 独逸政治史에 있어서 三大革命이라 일컬을만하다 이것은 戰後 20餘年間 執權해온 基民党政權의 終息이었을 뿐만 아니라 對東歐圈과의 緊張緩和를 目的으로 한 「東方政策」을 積極的으로 追進하므로써 独逸의 統一外交에 活氣를 불어넣기 始作하였다. 「브란트」西独首相은 1969年 10月 21日 就任後 첫 議會施政演說에서 (1) 独逸國民은 民族的自決權을 갖고 있다. (2) 独逸政策의 現實的當面課題는 東西独對決狀態에서 脫皮하여 独逸의 「兩部分關係」를 解決함으로써 民族單一體를 成就하는 것이다. (3) 独逸 땅에 並存하고 있는 「두개의 独逸國家」는 결코 相互外國이 아니며 이들간의 相互關係를 特殊한 方法으로 規制하여 相互共存할 수 있게 할수있다 라고 천명하여 「하나의 独逸民族內的 兩個의 独逸國家」概念을 設定함으로써 東方政策의 現實性을 誇示하였다.

「브란트」西独首相의 東方政策의 窮極의 目標은 東西独의 統一에 歸着되고 있다. 「브란트」首相의 「再統一된 独逸」概念은 歐洲平和秩序속의 統一된 独逸을 意味하며 「再統一은 19世紀의 民族國

家에로의 復歸가 아니라 領土的 制度的 法律的側面的 統一은 우선 차지하고 獨逸民族의 實質生活內容의 側面에서의 統一이란 意味에서 傳統의 國家統一概念과는 本質을 달리하고 있다. 「브란트」首相은 傳統的 意味의 國家統一概念을 內包할 可能性이 있는 「獨逸再統一」이라는 用語의 使用을 拒否하고 東西獨의 分斷現實是認으로부터 出發하는 「統合」이라는 現實的概念을 使用하고 있다.

「再統一」의 「再」字는 가령 「비스마르크」帝國과 같은 過去에 있는 特定地點에로의 復歸를 意味할 可能性이 있다고 疑問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브란트」首相의 獨逸統合概念은 獨逸의 再統一을 내심 두려워하고 있는 其他 歐洲國民들의 心理的 壓迫感을 緩和解消하고 歐洲平和秩序樹立을 위하여 努力을 傾注하는 獨逸國民像을 부각시키려는 說得이며, 異質의 政治 社會制度下에 固着화된 分斷國統一問題의 至難性을 認定한 現實主義的政策으로서 迂廻的 統一接近法의 表現이다. 이와 같은 「브란트」西獨首相의 獨逸統合概念에 對한 새로운 接近法은 다음의 要素를 基本考慮事項으로 看做하고 있다.

첫째 歐洲平和에 대한 信念이다. 平和와 和解意志야 말로 獨逸 外交政策의 「才一次의 理念이요 礎石」이라고 밝힘으로써 戰爭으로 點綴되었던 過去 歷史로부터 얻은 教訓에 따라 真正한 平和를 國家 利益으로 표방할 것을 獨逸 外交政策의 基礎로 삼고 있는바 單純히 經濟的 軍事的 「힘」만이 아닌 信賴, 理解와 親善을 復活시킬 수 있는 道德과 知性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다. 여기

에서 歐洲平和秩序樹立過程에서 獨逸의 知性人과 靑年들이 「리더쉽」을 發揮하여 前衛隊役割을 担当하여야 한다고 強調한다.

둘째 ◦ 獨逸分斷狀態의 克服은 期間을 預言할 수 없는 長期的過程이다. 그러므로 現時點에서 當分間 可能한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야 한다. 理論論爭이나 獨斷論戰으로 貴重한 時間을 消費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現狀은 變化될 수 있으며 歐洲現狀變化의 促成劑로써 緊張緩和政策은 必須的인 것으로 「브란트」는 看做하고 있다. 이런 意味에서 볼때 傳統主義的 統一外交接近法은 「先統一後平和」原則으로써 統一을 위한 現實的接近方法이 아니며 自己主張의 反復에 不過한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緊張緩和를 통한 對東方接近은 其實 어떤 새로운 概念創造가 아니라 現實에서 싹트고 있는 意思疎通의 출기에 物을 뿌림으로서 發育시켜나가는 長期的眼目的 養生作業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세째 「브란트」西獨首相은 「이데올로기」는 克服될 수 있다는 信念에서 出發하고 있다.

- (1) 長期的觀點에서 볼때 共產主義者의 使命意識은 漸次 減退一路에 있으며
- (2) 共產主義者는 自体의 終末을 意味하는 世界革命만을 主張할 수 없게 되었으며
- (3) 共產主義國家는 최소한 國民의 社會福祉와 個人의 自由保障을 實現시켜야 하며
- (4) 오늘날 全歐洲社會는 「敎理에서 부터 生産으로, 그리고 權力의

分散化와 個人生活向上中心으로 變化하고 있으며 이 一般的潮流는 蘇聯 및 共產陣營도 例外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褪色化過程은 長期間의 時間을 要한다는 點에서 「브란트」首相의 東方政策은 現實主義에 立脚한 試圖로서 自由體制에 대한 確信은 共存思想을 받아들이는 勇氣로 表現되고 있다. 暴力手段에 呼訴함이 없이 相異한 信念과 價值體系를 갖인 個人, 團體, 國家가 共生하는 것으로서의 「共存」概念은 人類의 持續的發展을 갖어오는 必要條件이라고 「브란트」首相은 判斷하고 있다.

네째 「이데올로기」克服過程에 있어서 雙方은 交流를 통하여 利害關係의 共通分母를 發見하고 共生의 길을 開拓할 수 있으며 여기에 勇氣있는 冒險은 必須的이라는 信念이다. 卽 斷絶된 暗黑世界(共產主義社會)에 光明의 빛을 비추려면 文化的, 經濟的, 社會的 人間(國民) 交流등의 非政治的分野로 부터 始作하여 政治的對話의 基盤을 造成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東歐 共產陣營과 可能한 範圍內에서의 最大限度의 接觸은 他地域社會體制의 變化를 成就시킬 수 있는 고무적 計劃이다. 다른 말로 表現한다면 紛爭의 性格을 變化시켜야 한다. 이 作業은 필경 平和를 위한 透過政策이요 平和를 위한 冒險政策이다. 왜냐하면 相對方社會體制의 變化를 期待하려면 우리도 相對方의 影響力앞에 노출되고 開放되게 마련인 冒險이 수반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積極的인 平和接近方法으로서의 「透過政策」은 「東方政策」의 또

다른 表現語句로써 自由에 대한 信念으로 부터 流出된 平和의, 冒險 試圖인 것이다. 技術, 科學, 文化, 經濟, 知識 「스포츠」 學生交流를 통한 對話 및 理解는 現在 특히 歐洲에서 活潑히 進行되고 있다. 各自의 利害關係와 狀況을 理解함으로써 意見合致點을 發見하는데 寄與하고 있다. 確實히 歐洲는 이제 새로운 歐洲로 變貌하고 있다. 이 새로운 歐洲의 形成過程속에서 統獨問題 역시 現實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接近하고 있는 것이다. 「브란트」西獨首相의 東西獨交流論의 中心企劃目標는 接近의 積極化를 통하여 獨逸民族의 分離現象은 統合可能性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基本判斷 밑에서

- (1) 東西獨國民이 共生할 수 있는 整頓된 秩序創造를 追求하며
- (2) 分斷으로 苦痛을 받고 있는 獨逸國民生活를 改善하며
- (3) 東西獨接觸에 의한 政治的共同社會意識을 確固하게 維持하려는 있다. 故로 法律的이 아닌 政治的接近이며 道德性이 아닌 合目的性의 問題요. 對立이 아닌 共存의 變化속에서 東方國家와의 接近 및 獨逸의 接近을 통한 分斷의 克服, 이것이 獨逸國民이 實現시킬 수 있는 現實主義的 統獨政策이다.

(2) 現實認定政策

「브란트」西獨首相의 東方政策은 歐洲의 現實認定에 基盤을 두고 있다. 「브란트」首相은 東方政策을 展開함에 있어서 빈번히 「現實」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으며 不斷히 歐洲의 現實認定을 強調하고 있다. 특히 才二次世界大戰 戰後秩序가 20餘年에 걸쳐 固着化되었으며, 獨逸分斷과 東西軍事同盟體間의 對決狀態의 持續이란

現實을 東方政策의 基盤으로 생각하고 있다. 「브란트」首相이 「새로운 現實」을 創造하기 위한 「現實認定」을 論할 때 이것은 다만 現狀維持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現狀變更을 위한 出發點을 뜻한다. 그리고 「새로운 現實」創造의 概念은 領土回復의 主張이 아니며 不安定한 歐洲秩序의 平和秩序에로의 轉換을 意味한다.

共産側이 「現實」이란 概念에서 「現狀凍結」을 意味한다면 「브란트」首相은 「새로운 秩序를 품고 있는 現實」을 意味한다. 따라서 「變化」라는 變數가 항상 前提되고 있다. 「브란트」首相의 「現實」은 (1) 歐洲의 分斷으로 東歐는 「바르샤바條約機構」, 西歐는 「나토」同盟에 結束되어 相互對置狀態를 維持하고 있으며 東獨은 東歐에, 西獨은 西歐에 編入되어 軍事的으로 對立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獨逸問題를 歐洲問題와 分離하여 獨立的으로 論할 수 없으며 東西陣營의 對決狀態에서 부터 漸進的으로 全般的인 和解를 이루어야만이 獨逸의 統一可能性이 現實化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統一된 政治體制로서의 東獨存在의 認定에서 出發하고 있다. 西獨 및 「나토」會員國은 1945年以後 西獨의 唯一合法政府主張, 東獨의 國際法的承認反對등 東獨不承認政策을 堅持하였으나 東獨은 戰後 國內政治의 安定化로 事實上的 統治體制를 確立하여왔다. 東獨은 1971年 5月 「울브리히트」와 「호네카」의 平和的政權交差가 이루어졌으며 東獨의 執權黨인 「社會主義統一黨」은 戰後 20餘年동안 長期執權하므로써 政治的 基盤을 強化하였으며 唯一한 近代政黨으로서 東獨人口 1,700 万名中 200 萬의 黨員을 確保하고 있는 實情이다. 東獨은

政治体制의 安定뿐만 아니라 1960年度以後는 經濟發展을 表現하여 1960년부터 1969年間の 年平均經濟成長率 4.5% (西獨은 同 期間中 4.8%)를 維持하고 東獨은 現在 東歐圈에서 最高의 生活水準을 持續하고 있다. 東獨國民의 生活水準은 「헝가리」 「체코」보다 1/3程度 높으며 蘇聯의 2倍이다. 「브란트」西獨首相은 이러한 東獨의 政治的, 經濟的 体制의 安定化라는 「現實」을 認定하고 西獨과 西伯林間의 通路問題, 「나토」와 「바르샤바」機構間의 軍縮實現 및 歐洲安全保障會議의 開催問題 등 統獨外交의 当面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東方政策을 追進하였다.

(3) 緊張緩和政策

東方政策은 歐洲緊張緩和와 平和秩序를 부르짖으며 武力拋棄宣言을 하고 東歐諸國이 國交正常化條件으로 提示한 諸條件을 實質的으로 認定 혹은 受諾하고 있기 때문에 平和와 양보일색인 듯한 의아심을 자아내나 一方的인 양보나 保障없는 「슬로건」의 提示는 결코 아니다. 「바르샤바」條約國들은 (1) 「獨逸民主共和國」을 하나의 國家로 承認할 것. (2) 獨逸의 兩部分間의 境界線과 「오데르-나이제」線을 國境線으로 認定할 것. (3) 核武器保有 努力 및 野望을 拋棄할 것 및 (4) 西伯林을 東獨領土內에 存在하는 하나의 自律的 政治單位體로 認定할 것 등을 계속 主張하여 왔다.

이에 對하여 「브란트」西獨首相은 無條件 事前承認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브란트」首相은 伯林問題에 對하여 強硬한 立場을 堅持하고 東方側의 無條件的인 事前要求에 對하여서도 「단일

이러한 條件들이 對話의 通路나 協商會談을 回避하는 手段으로 設定된 것이라면 이는 克服不可能의 先條件提議에 不過하므로 事前 양보는 결코 成立될 수 없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西獨外交政策의 基本要素가 「東方政策이라면 緊張緩和政策은 東方政策의 才一次的 要素이다. 즉 獨逸統一外交政策의 才一次的 目標은 東方政府와의 和解에 있다.

獨逸의 統一은 緊張緩和, 軍縮 및 平和確保로서의 信賴獲得段階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들 諸段階는 政治的緊張緩和 및 和解와 直結된 것으로 獨立적으로 解決될 性質의 것이 아니다. 「緊張」은 利害關係의 相衝現象으로서 緊張緩和政策은 利害關係의 調和를 意味한다.

歐洲의 緊張緩和는 美·蘇超強大국이 冷戰體制로 부터의 「어떤 變化」를 取하지 않는限 自動적으로 創成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變化」는 「뿌력」思想에 立脚한 現狀固着化로 인한

現實의 「디렘마」로 부터의 脫皮를 意味한다. 「브란트」西獨首相은 1967年1月 「스트라스부르크」에 開催된 歐洲理事會諮問會議席上에

서 「東方政策」論의 緊張緩和의 概念을 다음과 같이 整理하였다.

첫째 緊張緩和政策은 相衝하는 對立的 目標과 利害關係를 調整하는 妥協政策이며, 둘째 共通利害關係 및 協力の 領域을 보다 擴張하려는 企圖이며, 셋째 緊張緩和는 하나의 包括的計劃이다. 그리고 緊張緩和政策은 「現實의 認定위에서 現實克服政策」이다.

「브란트」는 現實을 克服하기 위하여 果斷性있게 獨逸領土위에서의 二個의 異質的政治体制 혹은 政治社會를 認定하는 것이다. 1967年 8月4日 當時 「브란트」外相은 「루마니아」訪問時의 한 演說에서 東方政策의 基調가 和解政策임을 強調하였다.

緊張緩和政策의 具體的表現은 武力拋棄宣言이다. 武力拋棄宣言을 最終目標로 하는 緊張緩和政策을 통하여 歐洲平和秩序를 樹立함에는 一連의 基本原則이 提示되고 있다.

(1) 平和秩序樹立에 있어서 歐洲는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異質的體制가 存在하고 있으며 이들 構成國은 主權國家라는 事實을 반듯이 考慮하여야 하며 (2) 어떠한 形態이든 他國의 內政不干渉과 武力行使 및 威脅拋棄宣言을 實効케 할 수 있는 保障이 있을것

(3) 歐洲諸國間의 問題에 「유엔」憲章의 原則이 適用될것

(4) 情報의 自由로운 交換 및 通行의 自由가 可能한 限 最大로 擴張될 것 (5) 「나토」會員國들은 「나토」條約에 表現된 바와 같이 民主主義 個人自由, 法治主義原則을 平和秩序속에서 保護받을 수 있다는 確信을 갖일 것. (6) 歐洲全地域에 있어서의 効率的安保體制의 實現과 이 安保體制에의 美國과 蘇聯의 參與등이다.

(4) 協商政策

東西冷戰中에서 協商은 例外없이 共產陣營에 대한 自由陣營의 양보행위로 看做되는 傾向이 있다. 특히 統一外交政策 展開에 있어서 協商은 一種의 自己喪失과 恰似한 統一努力的 拋棄를 뜻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協商概念에 對한 歪曲된 理解는 西獨의 東方政策遂行過程에서는 適用되지 않는다. 雙方이 自己利益을 現實化하면서 상호양보로서 一定한 合意點을 發見하는 協商本然의 概念이 適用된다 「브란트」西獨首相은 「合理的인 目標에 接近할 수 있는 길이라면 汗流이라도 내달기 위해 探索戰을 벌려야 한다」고 主張하면서 「現實主義的 協商에 대한 準備가 不充分했기 때문에 西方側의 政治的 行動이 失敗했다」고 指摘하고 있다. 「브란트」의 現實主義的 協商主義는 사소한 양보로 인해 莫大한 損害를 볼 것이 아닌가 하는 不安과 恐怖心도 갖지 말며, 그렇다고 完全한 一方的勝利라는 樂觀도 갖지 않으며 오직 信念과 忍耐와 眞實로서 協商「테이블」에 임한다는 態에서 出發하고 있는 것이다. 協商主義原則은 「브란트」首相뿐만 아니라 獨逸政治家中 「멘데」自民黨黨首, 社民黨의 「베너」副首相과 「얼러」院內總務 등의 對東歐協商論에 의하여 積極主張되어 왔다. 「멘데」는 「獨逸統一의 協商은 蘇聯에 의존한다. 獨逸統一의 可能性은 獨逸의 統一이 蘇聯에 利益을 주는 條件을 마련하는데 있다」라고 強調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單刀直入的協商으로 蘇의 策略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한 狀況分析과 相對方의 真意把握에 敏感하여야 하며 過去歷史에서 「라팔로」條約에 대한 의구심같은 것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하여서는 蘇聯과 匹敵할만한 相對國이 있어야 한다고 附言하고 있다. 따라서 直接的이든 間接적이든 최소한 美國의 默示的合意, 支援, 參與 등이 없는 限 統獨과 連結될 수 있는 協商은 不可能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獨逸의 安全保障과 伯林守護 및 統獨問題를 위해서는 美國의 責任과 行動이 莫重한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蘇聯을 協商의 才一對象으로 看做하여 對蘇協商을 試圖한 點에 있어서는 「基民黨」政權에서도 本質적으로 다를 바 없다.

다만 基民黨政權은 積極性, 計劃性을 欠如하였고 「先統一後平和原則」을 固執함으로써 冷淡한 反應에 直面하였을 뿐이다. 一般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蘇聯의 平和共存原則의 目標設定中 ((1) 原子戰回避 (2) 西方同盟弱化 (3) 非同盟國家吸收) 「브란트」西獨首相은 原子戰回避問題에 깊은 関心을 쏟고 있다. 그리고 世界의 真正한 共存의 機會란 蘇聯의 教條主義的 「이데올로기」의 戰略이나 政策때문이 아니라 利害關係(國家利益)에 依存한다고 確信하고 있다.

「브란트」首相은 1968年5月10日 「구스타프스트레 제만」90回誕生 祝祭에서 「現世界는 利害關係의 時代이다. 平和的手段과 理性에

에 따른 利害關係의 調和만이 理想實現의 前途에 보다 가깝히 接近할 수 있는 唯一의 方法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5) 歐洲才一主義

歐洲의 經濟的 政治的統合을 促求함은 獨逸外交政策의 常數가 되었다. 東方政策의 概念속에는 항상 「歐洲民이 直接 參與하고 함께 利益을 追求하는 共同意識이 包含되어 있다. 그리고 世界的 規模의 東·西對決이 歐洲를 본거지로 維持되어온 以上 東·西和解를 위한 才一次的試驗은 歐洲에서 成功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東方政策에서 말하는 歐洲才一主義는 「드골」이 提唱한 獨逸體制의 歐洲도 아니며 大英帝國을 主軸으로 하는 「앵글로색슨」의 歐洲도 아니다. 「브란트」의 歐洲像은 英國과 「스칸디나비아」諸國의 民主傳統과 東歐諸國의 自由에 대한 鄉愁와 統一된 獨逸等의 諸民主的要素를 配合함으로써 全歐洲人의 歐洲라는 政治, 經濟, 社會的 歐洲共同社會의 形成을 意味한다. 歐洲의 統一을 위한 才一段階로서 「EEC」와 「EFTA」의 統合은 우선 國際政治舞臺에 있어서 歐洲의 發言權을 強化할 수 있는 것이며 東, 西歐洲를 連結하는 「歐洲合衆國創設目標」을 向한 中間段階로 看做하고 있다. 그리고 現在 「EEC」가 經濟的인 側面으로 부터 漸次 政治的結束의 次元으로 發展함에 따라 政治協力の 實現이 이루어질 경우 歐洲統合에 莫大한 기여를 할 것이다.

나.東西獨接觸

(1) 「社会文化的接觸」

政治的次元에 있어서의 東西獨接觸은 相互間에 개재하고 있는 意見對立으로 因하여 여러가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었지만 非政治的接觸 내지 社会文化的接觸은 1945년부터 1961年8月以前까지 間헐적으로 實施되어 왔으나 東獨으로 부터 西獨으로의 移住者가 急增함에 따라 東獨當局은 이를 防止하기 위한 措置로 伯林障壁을 構築(1961年8月12日)하였고 이에 따라 社会文化的接觸도 一時的으로 中斷되었다. 그러나 西獨은 東獨治下의 獨逸人과 人的, 文化 및 「스포츠」交流等으로 人道的交流關係를 回復하고 緊張緩和를 摸索하는 同時 全獨逸國民이 相異한 兩體制下에서도 異質的社會固定化를 防止하기 위하여 努力하였다. 한편 이와같은 西獨側의 意圖와는 달리 東獨은 政治人的 接觸을 通하여 「하나의 獨立國家」로 認定받기 위해 狂憤하였고 人的, 文化 및 「스포츠」等 交流를 政治的目的으로 利用하려 하였다.

人的交流는 1963年「브란트」伯林市場이 「아부쉬」東獨副首相에게 東西伯林往來再開를 위한 書翰을 보낸뒤, 이어 兩獨間의 實務陣이 몇차례의 會晤 끝에 1963年12月17日 東·西伯林「通行証協定」이 締結된 바 있으며 지난 1971年9月3日 4大國(美, 英, 仏, 蘇) 伯林協定假調印後, 東獨과 西獨, 東獨과 西伯林間에 協議되어온 2個의 伯林協定施行細則이 1971年12月11日 成功的으로 妥結되고 이어 1972年6月3日 西獨과 西伯林間의 通行自由, 西伯林市民의 東伯林 및 東獨訪問 그리고 西伯林市民에 對하여 西獨地域과 同等한

國民的地位를 確保한다는 內容의 伯林 4 大國協定이 定式調印되었으며 이보다 앞서 1972年 5月 12日 東·西獨通行에 관한 國家協定이 締結되었다. 이 國家協定은 東·西獨通行에 관한 問題以外에 東·西獨間에 最初로 締結된 國家「레벨」의 協定이라는 點에서도 重要한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 또 이 國家協定은 西獨人의 東獨訪問 回數를 增加시켰을 뿐만 아니라 1961年 伯林障壁構築以來 最初로 東獨人의 西獨家族訪問을 許容하였다는 點에서 注目할만 하다. (勿論 東獨人의 西獨旅行은 一部 認定하여 왔다)

以上 極히 概略的으로 說明한 東·西獨間의 人的交流는 分斷國接觸關係에서 重要한 意味를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그 歷史的展開過程과 交流의 實態에 對하여 仔細한 檢討가 必要한 것이다.

우선 敗戰後 獨逸에 進駐한 4大國管理委員會의 決意에 따라 一 占領地域으로부터 他占領地域으로 旅行하려는 者는 그가 居住하고 있는 占領軍이 發行하는 旅券을 所持하므로써 旅行이 可能하였다. 그後 西方側 3個地域占領軍의 合意에 의하여 이러한 制度가 廢止된 때 反하여 蘇聯占領地域에로의 旅行은 1948年 6月 貨幣改革과 1953年 伯林封鎖로서 더욱 어려워졌다. 또 西獨人으로서 東獨에 旅行하고자하는 者는 旅券 以外에도 東獨에 居住하고 있는 親戚이나 親知가 東獨當局에 申請하여 許可받은 東獨滯在許可証을 所持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東獨으로 부터 西獨 및 其他地域으로 旅行하려는 者는 旅行期間中 그의 公民証을 警察에 保管시키고 警察이 發부하는 身元證明書를 携帶하게 하였다. 그러나 1957年以來 東獨當局은 東獨人의 西獨旅行을 더욱 制限하였으며 特히 學生, 青年

同盟員의 旅行을 禁止시켰다. 따라서 東獨人의 西獨旅行者數는 격심하게 減少되었다. 1959年以來 西獨旅行許可發給申請은 面單位로 構成된 「全獨問題委員會」의 決議에 회부되어 만일 申請人의 신청이 西獨으로 피난간 事實이 確認되면 西獨旅行이 不可能하게 되며 特히 面人民警察署의 最終的承認을 必要로 하였다. 1961年8月13日 伯林障壁構築에 따른 休戰線地域封鎖強化로 因하여 東獨人의 西獨旅行은 黨員, 鐵道員, 運轉士 및 船員 등 特殊人으로 極히 制限되었다. 그러나 東獨當局은 1963年以後 政策的利得을 目的으로 65歲以上の 年金受領者에 限하여 年金支払棄避와 부양의무해방이라는 政策的目的에서 西獨 및 西伯林旅行을 合法的으로 認定하여 왔다.

以上과 같은 統制 밑에서 東獨人의 西獨旅行者數는 1963년 및 1964년에는 每年 約 3萬名으로 推算되며, 1965년에는 不過 18,000名程度였고, 1966년에는 約 16,100名이며, 1967년에는 約 13,300名程度, 1968년에는 9,500名에 不過하였다. 이 統計中 80%가 65歲以上の 年金受領者이고 其他 20%는 身體障擱로 因한 勤務不能者였다.

한편 西獨人의 東獨旅行者는 東獨當局의 滯在許可下에 年1回 東獨居住近親을 訪問할 수 있었다. 訪問者의 東獨滯在期間은 4週日間으로 限定되었다. 기타 西獨人은 每年 東獨의 「라이프찌허」商品博覽會參觀目的으로 東獨訪問이 許容되나 西獨實業家들이 主權하는 東獨觀光旅行은 許容되지 않았다. 그리고 東獨研究機關 및 團體의 招請으로 一部 西獨人의 個人的 團體的 東獨旅行이 許容되었다.

西獨人의 東獨旅行者數는 1967年度에 約 1,400,000名, 1968年

度에 約 1,260,000 名, 1969 年度에 1,100,000 名이고 1970 年前半 8 個月間의 旅行者數는 921,000 名에 達하였으므로 1970 年 1 年間을 計算에 넣으면 旅行者數는 增加될 것이다.

이러한 西獨國民의 東獨旅行 및 觀光은 近年에 이르러 더욱 活潑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東獨當局은 西獨人의 東獨觀光에 대하여 特히 技術上의 困難性을 구실로 西獨人의 觀光所願地를 制限하고 있다. 이러한 東獨政權의 政策은 西獨觀光客의 來訪에 따르는 東獨住民의 自由化思想의 伝播를 防止함과 同時에 西獨의 飛躍的 經濟發展에 對한 東獨의 經濟的後進性을 隱微하려는데 目的이 있다.

또 東獨當局은 1968 年 7 月 1 日부터 西獨과 西伯林間의 旅行者에 對하여 東獨境界線 出入時 東獨경비원에게 所有하고 있는 西獨 및 西方側貨幣를 申告하도록 要求하고 있으며 東獨貨幣와 東歐共產圈貨幣의 所持를 禁止하고 있다.

그리고 東獨政權은 1964 年 11 月 25 日부의 措置로써 東獨을 訪問하는 西獨國民은 滞在費로 西獨「마르크」를 東獨「마르크」와 1 對 1 의 比率로 交換하여야 한다. 東獨當局은 1968 年 6 月 20 日부로 1 日 滞在費를 5 「마르크」에서 10 「마르크」로 引上하였다. 또 東獨當局은 西獨의 旅行者에 對하여 道路使用料의 支払을 要求하고 西伯林과 西獨間의 道路交通에 있어서도 東獨政權은 乘用車는 물론 貨物自動車의 通過에 對하여 所定의 道路使用料를 徵收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뿐만아니라 西伯林과 西獨間의 水路交通에 있어서도 所定의 使用料를 받고 있다.

東·西獨間의 鐵道交通에 있어서도 蘇聯과 東獨은 1955 年 9 月 20 日

부 條約에 의하여 蘇聯은 聯合國協定을 無視하고 鐵道管理權을 一方的으로 東獨政權에 移讓하였다. 이에 따라 東·西獨貨物運送量의 40%는 東獨鐵道가 担当하고 나머지 60%는 西獨聯邦鐵道가 担当하여 西獨鐵道當局은 自己區域內의 運送料만을 徵收하도록 되었다. 以上과 같이 東·西獨 및 西伯林間의 交通은 「東獨의 國家說」에 立脚한 妨害政策으로 因하여 決定的制限을 받고 있으나 西獨과 西伯林間의 人的 物的인 航空輸送은 여전히 東獨의 妨害로부터 除外되고 있다.

東獨이 主張하고 있는 2國主權國家說에 立脚한 固執에 의한 人的 交流의 妨害工作도 國際情勢의 變遷에 따라 커다란 變動을 招來하였다. 獨蘇·獨波條約의 西獨議會批准을 條件으로 東獨政權은 長期間禁止되었던 西伯林市民의 東伯林 및 東獨旅行을 可能케 하는 緩和된 方案이 東·西獨關係者會談에서 合意를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西伯林市民도 西獨國民과 같이 東伯林 및 東獨에로의 旅行은 물론, 東獨의 靑年들도 緊急한 家庭事情을 理由로 西獨에 旅行할 수 있는 可能性이 부여되었고 이를 위한 東西獨通行協定이 1972年 5月5日부터 東伯林에 있었던 「에곤 바르」西獨國務相과 「미카엘 코울」東獨國務相間의 會談에서 最終적으로 決定을 보게 되어 同年 5月12日 「본」에서 앞서 指摘한 東·西獨通行協定이 假調印되었다. 東·西獨間의 人的往來에 수반하여 郵便 및 電信往來는 休戰線을 넘어 繼續되어 왔다. 東·西獨間의 郵便往來는 便紙, 小貨物 및 郵便小包 등의 往來이며, 送金 및 商品의 부송은 禁止되어 있다. 1951년부터 1968年上半期까지 西獨이나 西伯林으로부터 東獨이나

東伯林에 부송된 小貨物 및 小包는 무려 7億 1,300萬個以上이며 이 數字中 約 半은 1kg에서 7kg까지의 重量을 가진 小貨物이다. 또한 東獨으로 부터 송부되어 오는 小貨物 및 小包의 量도 상당수에 達하고 있다. 이러한 實情에도 不拘하고 東獨은 東伯林을 包含한 東獨地域內的 8個 郵便局으로 하여금 小貨物과 小包檢閱을 實施하고 있다.

電信往來도 아직 完全한 解決을 보지 못하였지만 1970年 4月 29日의 會談으로 말미암아 東·西獨은 電話線과 「테렉스」線을 連結시켜줄 義務가 부과되었으며 지금까지 連結되었던 34個 電話線以外에 40個 電話線을 新設하기로 合意하였다. 以外에 東·西伯林間에도 電話線과 「테렉스」線이 連結되어 있으나 이것의 完全한 소통을 위하여서는 아직 許多한 問題點이 남아 있다. 그리고 1972年 7月 22日 西伯林과 東獨間 20年만에 直通電話가 開通된것은 注目할 만한 發展이다.

다음으로 東·西獨官庁間에는 行政面에 있어서 相互広範圍한 共助關係가 維持되고 있다. 東·西獨間에는 行政面 특히 身元部門, 靑少年善導, 保險制度, 社會制度, 保健制度등에 共助와 協調가 成立되고 있으나 東獨은 西獨亡命者에 대한 問題, 家族再結合問題, 損害賠償問題, 金錢反換問題, 戰時中에 입는 損害의 補償問題등에 관하여서는 協調를 拒否하고 있다. 西獨의 地方 및 實務上의 主務官庁은 東獨의 地方 및 當該官庁에 直接 그 協調를 要請하고 있는 것이 實例이지만 이러한 事項은 東·西獨다 같이 달단행정관청에서 取扱하는 것이 常例이다. 이러한 常例에도 不拘하고 最近 東獨의 當

該官庁은 身元關係를 管轄하고 있는 地区委員會에로 부터 西獨의 該當州務部長官 앞으로 協調를 要請하는 公文을 發送하는 例가 許多하다. 東獨當局의 共助要請에 대한 處理方法은 물론 統一性은 없으나 대개 西獨의 當該官庁은 그 回答을 直接 東獨의 當該官庁에 發送하고 있다.

또 東·西獨의 法院 및 檢察庁間에는 民刑事上の 問題에 있어서 法律上の 共助關係가 維持되고 있다. 萬一 東獨으로 부터 法律上の 共助를 要請하여 오면, 이 問題를 担当한 西獨法院은 그 結果를 東獨의 地方 및 實務上の 當該法院에 直接 傳達하지 않는다. 또 事件이 西伯林法院의 管轄인 境遇에는 東獨法務部長官은 西伯林法務部長官에 公文을 發送하는 形式을 取한다. 이리하여 伯林法院이나 西獨法院에 의하여 東獨으로 法律上の 協調內容이 送付된다. 그리고 西獨에서 東獨에 要請하는 法律上の 共助申請도 西獨法院과 東獨法院間에 直接 傳達되는 것이 아니라 西獨法院이 所在하고 있는 그 州의 地方法務部長官을 經由하여 東獨法務部長官에게 傳達되며 解決된 案件도 同一한 方法으로 東獨으로 부터 西獨으로 傳達된다. 이러한 節次는 東獨의 固執으로 말미암아 1970年以來 實施되고 있으나 東·西獨檢察間의 共助關係도 1968年이래 역시 東獨의 一方的處事로 말미암아 西獨內의 地方 또는 實務上の 當該檢察庁이 東獨의 檢察總長에게 申請하게 되어 있으므로 直接的共助關係는 成立되지 않고 있다.

○ 文化的接觸

東·西獨間의 文化接觸에 對하여 東獨은 如前히 그가 主張하는

2 國家說 或은 西伯林도 하나의 國家로 보자는 3 國家說에 立脚하여 拒否하고 있다. 이러한 東獨의 努力은 西獨의 自由民主主義理念의 傳播을 防止하기 위하여 西獨과의 文化的接觸을 人爲적으로 杜絶시키려는데 目的이 있다.

이에 反하여 西獨政府는 東·西獨間에 있어서 完全히 自由로운 文化的交流를 促進시키므로써 東獨住民도 하루속히 西方側의 自由主義의 精神文明에 融化되어야 한다고 力說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西獨政府의 努力은 東獨의 非協調的妨害로 因하여 미미한 成果를 거두고 있을 뿐이다. 東·西獨間의 自發的이며 個別的인 學文的, 藝術的交流에 대하여 東獨은 「불세비기」思想에의 同調과 이를 위한 強硬한 政策을 施行하므로써 文化的交流를 抑壓하고 있다.

따라서 東·西獨間의 文化, 學術交流는 1945年以後 公式的인 接觸은 없었다. 그러나 民間내지 民間團體의 相互交流는 間헐적으로 持續되어 왔으며 특히 西獨의 民間이나 民間團體는 東·西獨間의 文化的紐帶를 蘇生시키기 위해 細心한 努力을 傾注하여 有名한 「오케스트라」나 演劇團의 相互訪問을 維持하여 왔다. 그러나 1957年 東獨의 社會主義統一黨의 文化學術交流制限措置와 1961年 8月 伯林障壁構築措置로 制限을 받게 되었다.

다만 1962年 東獨에서 舉行된 「괴뢰」協會總會와 「바하」祝祭, 「헨델」祝祭등에 小數의 西獨文化人이 參席한바 있으며 1963년에는 東獨의 旅行許可制限緩和로 「드레즈메너」管絃樂團의 西獨訪問등 文化接觸이 增加되었다. 1964년에는 音樂, 演劇, 「발레」團의 相互交流가 있었다. 東獨의 「작센」의 國立「드레스덴」관현악단과 「라이

프찌히」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西獨訪問이 있었고 東伯林的 獨逸劇團도 西獨의 여러 都市에서 公演을 가졌다. 그리고 西獨演藝團 「힐데하임」과 「막테부르크」劇團이 「오닐」의 「밀짚」과 「파벨코츠」의 「80日間の 世界一週」로 東獨에서 公演을 가졌으며 「에센」의 「폴크방」 「발레」團이 東獨訪問公演을 가졌다. 1965年에도 東·西獨民間團體間的 文化的紐帶活動이 繼續되어 音樂分野에서 東伯林「희극오페라」團의 西獨公演이 있었는데 특히 公演後 同「오페라」團의 많은 數가 東伯林으로 돌아가기를 拒絶하고 西獨劇團에 參加한 點은 注目된다. 文芸分野에서는 1964年과 1965年에 伯林工科大学村에서 冬夏季「세미나」가 開催되었으며 學術分野에서 「막테부르크」에서의 「한스」歷史學會, 「작센」의 「프라이베르크」에서의 「山林人協會」年次總會 및 「할레」에서의 「獨逸아카데미年次總會」에 西獨科學者들이 參席하여 講議를 하였다. 其他 西獨은 東獨에서 發刊되는 新聞雜誌를 통해 東獨의 實情과 統計的 現況把握이 可能하였다.

一般的으로 東·西獨間的 文化學術交流는 民間「레벨」에서 制限된 水準으로 維持되었으며 특히 政治性和 密接히 關連되었다는 特色을 갖고 있다. 東獨側은 文化學術關係를 政治的目的에 利用하려고 努力하였다. 1964年4月21日 東獨의 文化省長官「한스·벤토진」은 西獨各州의 文教長官들에게 보낸 書翰을 통해 西獨各州의 文教長官 代理者와 東獨文化省代理者間的 「文化協商」을 提議함과 同時에 文化協定の 締結과 常設機構로서 「委員會」의 設置를 主張하였다. 이에 對하여 西獨側은 兩獨間的 文化學術面에서의 接觸은 單純히

獨逸國民 個人 또는 民間團體相互間의 接觸이며 政府間의 公的인 交流는 아니라고 主張하였다. 이것은 東獨側이 文化學術面의 交流를 政治問題化하려는 劃策, 특히 「2 個의 獨逸國家의 存在」 理論에 利用됨을 反對하기 爲하여서였다. 따라서 東獨과의 「文化協定」이 나 「文化委員會」의 設置가 必要한 것이 아니라 東獨의 一方的이고 恣意的인 東獨居住文化人에 대한 旅行許可制限의 中止가 必要하다고 東獨側에 強調하였다.

○ 新聞交流

1968年 西獨議會는 처음으로 新聞의 內容이 西獨이 自由로운 基本秩序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限하여 西獨의 領土밖에서 (東獨) 發刊되는 新聞의 輸入 및 配布를 許容하였다. 이에 따라 1971年度 東獨刊行物의 購讀現況을 살펴보면 66種의 東獨新聞이 西獨으로 流入되고 週間 및 月間刊行物이 每月 2,200部 그리고 每日 2,800部의 東獨의 定期的日刊紙가 西獨으로 流入되었다. 이 中에서 東獨共産黨機關紙 「노이에스 도이취란트」가 1,650部로 最高의 比重을 占하고 있다.

○ 體育面의 交流

體育面의 交流에 있어서도 東獨은 國際法上의 承認을 主張함으로써 東·西獨을 結合하는 全獨逸「팀」의 構成을 東獨은 拒否하고 있다. 東獨은 東獨體育會의 創立이래 東獨「팀」을 獨逸「팀」으로 看做하고 東獨「팀」의 競技記錄만을 發表하고 西獨體育界의 記錄을 黙殺시키고 있다. 이에 反하여 西獨體育會는 東·西獨을 網羅한 最高記錄을 發表하고 있다. 西獨體育會長의 꾸준한 努力의 結果

1960年の「올림픽」에 東・西獨이 單一「팀」으로 參加하게 되었으나 1959年以來 새로 制定된 東獨國旗佩用問題를 中心으로 논란에 부딪혔다. 이런 問題를 調整하기 위하여 國際「올림픽」委員會는 單一獨逸「팀」을 위한 새로운 「올림픽」國旗로서 「黑赤黃」에 白色의 「올림픽」五輪이 든것을 使用하도록 指示하였다. 그後 1964年 東京「올림픽」에서 東西獨單一「팀」이 構成되었다. 그러나 單一「팀」構成을 위요한 問題에 염증을 느낀 國際「올림픽」委員會는 1965年 10月의 「마드리드」會議에서 「東獨體育會」를 「體育會 東獨」이라는 稱号하에 國際「올림픽」委員會의 正會員으로 加入시킬 것을 決議하여, 이렇게 함으로써 1968年の 「멕시코」 「올림픽」에는 「獨逸」과 「東獨」이라는 稱号로서 二個의 獨逸「팀」이 參加하게 되었다. 물론 國旗는 앞에서 말한 內容의 것을 使用하였지만 國歌는 「베토벤」의 第9番合唱交響樂, 第4樂章 「歡喜의 贊歌」를 演奏하였다. 이러한 國際「올림픽」委員會의 決定에 對하여 東獨은 그가 主張한 國際法上的 承認을 成就한 것으로 看做하고 西獨에서 開催되는 國際競技나 他國에서 거행되는 試合에서도 「東獨」이라는 表識과 東獨國旗 및 國歌 등을 使用함으로써 事故가 發生하였음은 물론 그들의 要求가 관철되지 않는 境遇 退場戰術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事情을 勸案한 國際「올림픽」委員會는 1968年 11月 12日부의 「멕시코」會議에서 「獨逸人民體育會」에 完全한 平等權의 認定을 決議하였고 西獨政府도 1968年 12月 18日부의 決議로써 1972年 「뮌헨」에서 開催되는 國際「올림픽」은 國際「올림픽」規定에 따라 行爲할 것을 示하였다.

東·西獨間の 体育面の 交流가 이루어질 때마다 東獨은 西獨選手들로 부터 東獨承認의 意思表示를 要求하고 있다. 兩獨間の 試合時에는 東獨은 東獨選手에게 西獨選手와 반듯이 어떤 政治的時局問題를 討論하도록 強要하고 있으며 그리고 勝算이 豫想되는 境遇에 限하여 西獨選手와의 試合에 応하고 있다. 1961年8月の 伯林障壁 構築과 더불어 東獨當局은 東獨選手들의 西方側出戰을 禁止하고 있으나 일단 西獨이나 西歐에 出戰한 東獨選手들은 「東獨代表」라는 特權도 저버리고 西獨에 亡命하는 例가 許多하다.

西伯林에 대한 東獨의 態度는 3國家說에 立脚하여 西伯林選手들의 西獨에의 예속을 禁止하려고 試圖하고 있다. 즉 東獨은 西伯林選手들의 孤立化와 아울러 西伯林에서 거행되는 모든 競技를 「포이콧」하고 있다.

그러나 西獨体育會는 1965年10月30日의 決議에서 1961年8月16日로 中斷된 東獨과의 体育交流가 再開될 것을 要望함과 同時에 1965年10月 「마드리드」에서 決定된바 있는 國際「올림픽」委員會의 決議에 따라서 西伯林은 西獨体育會에서 예속되어야 하며 東伯林은 東獨体育會에 예속되는 同時에 東獨은 이를 尊重하여야함은 물론 西伯林選手들을 배척하는 行爲를 中止하여야 한다는 것을 闡明하였다. 그리고 1970年11月初 「뮌헨」에서 開催되었던 會談에서는 兩獨逸間の 体育交流를 再開할 것에 관하여 兩側間에 原則的合意를 보았다.

(2) 經濟的接觸

東西獨間的 經濟交流은 다른 어느 部分에서도 볼 수 없으리만치 敗戰直後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秩序整然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經濟的交流은 沿革的으로 볼 때 東西伯林을 包含하는 東西間의 商品去來와 勤務支拂에 起因된 것으로서 그 始初는 獨逸占領地域間의 商品去來에 主目的이 있었다. 1945年의 「포츠담」會談에서 聯合國은 그들이 占領하고 있는 期間中 獨逸을 經濟的으로 單一體로 보고 또 占領地域間에 重要商品을 均等하게 配分할것을 決議하였다. 勿論 이 決議에도 不拘하고 1948年 6月 西方聯合國占領地域과 蘇聯占領地域에서 각각 貨幣改革이 實施됨으로 말미암아 異質的經濟圈이 樹立되므로서 東·西獨經濟交流은 制限을 받았지만 占領地域間의 交流 型態로서 經濟的交流은 持續되어 왔다.

占領地域間經濟交流의 첫 經驗은 英國占領地域과 蘇聯占領地域間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協定에 의하면 英國은 41,320 「톤」의 強鐵과 鐵을 蘇聯占領地域에 供給하고 蘇聯은 180,000 「톤」의 褐炭과 500,000 ㎡의 연소용나무를 英國占領地域에 供給할 義務를 지고 있다. 그후 이先例에 따라 美國과 蘇聯·仏蘭西와 蘇聯占領地域間에도 같은 類의 物品交換協定이 締結되었다.

그러나 東·西獨間經濟交流의 法的基礎는 1951年 9月 20日부의 「占領地域間의 商品協定」이다. 이 協定은 一名 「伯林協定」이라고 하는데 1960年 8月 16日부의 改正으로써 東·西獨經濟交易의 法的基礎를 確立하게 되었다. 이 協定의 根本的規定은 商品品目, 商品口座

및 支拂去來로 되어 있다. 本協定은 与件의 變更에 따라 改正할 수 있으나 無期限協定으로서 必要에 따라 年末에 三個月期限付로 解約通告權이 協定當事國에 부여되어 있다. 이 協定의 實質的履行을 위하여 西伯林에 所在하고 있는 西獨商工會議所의 산하기관인 占領地域內의 通商을 위한 「信託管理所」가 物品交易業務를 管掌하다가 現在는 西獨聯邦經濟省에 예속된 機關인 「占領地域內의 通商을 위한 信託管理所」가 代行하고 있다. 東獨의 經濟는 東獨對外經濟省內의 對內獨通商機關이 業務를 管掌하고 있다.

그리고 東·西獨間의 通商에 대한 清算은 다음과 같은 過程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 兩側의 商品交易은 供給과 購入이 長期에 걸쳐 均等하게 行하여져야 하며 (2) 支拂計定은 雙方의 地幣發行銀行을 거쳐 어음청산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3) 通商交易은 西獨의 市場價格을 基準으로 하여 清算되며 (4) 支拂單位는 兩側의 合意에 의하여 實質的으로 西獨(마르크)와 一致하는 어음청산단위로 하고 (5) 通商의 持續을 위하여 支拂計定에 있어서의 過度引出에 대한 可能性을 兩側은 協定에 의하여 成立하였다. (6) 通商에 從事하는 모든 商社는 許可를 받아야 하나 1969年12月以後부터 西獨에서는 需要, 供給의 절반분까지는 個別的許可가 必要없게 되었으며 兩側去來商社는 締結된 契約을 遵守하기 위하여 購入許可證과 商品送狀을 添付하여야 한다.

東·西獨交易은 東獨의 經濟發展에 至大한 比重을 占하고 있다. 西獨의 對東獨交易量은 西獨의 總對外貿易量의 2%를 占하고 있는데 불과하나 東獨은 對西獨交易이 總對外貿易量의 9%를 占하고 있다.

東獨은 1961年을 계기로 蘇聯과 密接한 經濟關係를 맺음으로써 西獨에 대한 經濟的隸屬을 脫皮하려 하였다. 蘇聯의 經濟的支援을 얻은 東獨은 對西獨經濟隸屬으로 부터 漸次 脫皮함으로써 伯林과 獨逸問題에 대한 獨自的決斷의 必要性에 따라 西獨과의 交易을 緩和하고 기타 西方側工業國家와 交易增大를 試圖하고 있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東獨은 다시금 西獨과의 經濟的交流를 갈망하면서도 東·西獨交易을 「두個의 獨逸國家間의 對外交易」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西伯林을 西獨에 隸屬되지 않은 地域으로 看做하고 東獨은 西伯林과 特別한 關係에 立脚한 通商關係를 締結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한편 東獨은 經濟的發展을 企圖함과 동시에 西獨政府가 取하고 있는 對東獨政策 특히 人道的인 側面에서 東獨住民의 經濟的地位向上에 置重하고 있는 것을 利用하여 1962年以來 西獨政府에 長期借款을 要求하여 왔다. 西獨政府는 1965年 4月 5日 이상의 借款을 주기로 決定하였고 1967年 3月에는 東·西獨交易에 있어서의 中期借款의 融資를 위한 公社를 創立하기에 이르렀다.

總體的으로 보아 東·西獨交易은 最近 數年間 強力한 增大一路를 걷고 있다.

東·西獨間의 相互供給量은 1960년에는 約 2.1 Mrd 「마르크」를 헤아리던 것이 1969년에 이르러서는 3.84Mrd 「마르크」로 上昇하였고 1970년에 이르러서는 4.5Mrd 「마르크」에 達하고 있다.

이와같은 供給量의 急進的增大는 西獨政府의 對東獨緩和政策과 아울러 通商促進策의 일환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東·西獨交易規模의 推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西独基民党政權의 東独不承認政策은 1955年の 「할슈타인·독트린」을 繼續追求하면서 동시에 東独經濟를 市場經濟体制로 轉換시켜 經濟的統獨을 實現하려 했으나 그와는 달리 兩獨間交易關係가 1961年까지 現物交易에 不過하였다. 그리고 1961年 伯林障壁構築으로 1961年이후 東·西獨間 交易量은 그나마 減小하였다.

西独基民·社民党的 大聯政(1966.12 - 1969.10)은 積極的인 東方政策을 追求하여 「키싱거」西獨首相은 社民党的 8個項要求條件에 따라 就任演說에서 統獨問題와 關聯하여 東·西獨交易의 增大도 力說하였으며 1967年 4月에는 東獨에 대하여 西獨關係改善을 위한 16個項의 具體案을 提示하였는바 그 中에서 (1) 西獨間交易擴大와 信用提供 (2) 西獨電力 및 「에너지」市場交換과 合理的인 電力共同經濟回復 그리고 (3) 經濟 技術 協調機關에 관한 協議를 提議하였다. 이에 對하여 東獨은 共産党機關誌 「노이에스도이취란트」를 통해 「國際法에 의한 西獨間關係正常化樹立이 先行條件」임을 밝히면서 東獨承認을 要求하였다.

1968年 8月에는 兩獨間經濟關係會談開催問題가 表明되었는바 同年 8月 9日 東獨 「울브리히트」는 西獨政府에게 이를 爲한 條件附全權代表者會談開催를 提議 하므로써 부수적으로 國家 承認獲得을 企圖하였으며 同 8月 17日 當時 西獨外相 「브란트」는 西獨經濟相會談開催考慮를 表明하고 閣議에서 이 問題를 決定하기로 予定하였으나 同 8月 21日 「바르샤바」條約軍의 「체코」侵攻으로 經濟關係會談開催問題는 後退되고 말았다. 이러한 동안에 西獨間交易關係에 있어서도 1966

年度 規模 27 億 5,700 万 「마르크」 (東獨對外貿易總規模의 10%)에서 1967 年에는 25 億 3,750 万 「마르크」 (9%)로 減小되었다 .

1969 年 10 月 西獨에서 「브란트」政權이 成立된 後 「獨逸內 2 個 國家의 存在」가 認定되고 對東獨關係正常化가 政策的으로 追求되면서 부터 兩獨間交易量도 1970 年에 45 億 4,800 万 「마르크」로 伸張되어 1967 年度對比 約 60%의 增加를 나타내었다 . 이것은 東獨의 1970 年度總貿易量의 約 10%를 占하는 것으로서 西獨이 東獨의 第 2 貿易 「파트너」임을 말하는 것이며 西獨의 境遇에는 東·西獨交易量은 全體貿易額의 約 2%에 該當된다 .

西獨經濟는 「마살」援助計劃에 의하여 1959 年 12 月 31 日까지 39 億弗의 援助를 받아 重化學工業化의 길에서 1950 年頃에 이미 戰前 水準을 突破하였으며 1958 年, 1959 年부터는 이미 對外援助를 開始하여 1961 年에는 對外經濟援助를 擔當하는 經濟協力省을 設置하였다 . 西獨의 貿易構造는 OECD (經濟協力 開發機構) 諸國과의 貿易이 1967 年現在 全體의 70%以上을 占하고 歐洲共同市場諸國과의 貿易도 38%를 占하고 있다 . 對東歐貿易은 急速度로 伸張하고 있으나 그 分担比率은 4%内外에 不過하다 . 對EEC 貿易은 地域內關稅引下에 따라 增加되고 輸出額이 輸入額을 凌駕하고 있어 繼續적으로 黑字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 1968 年 國際通貨體制動搖以後에도 西獨은 도리어 黑字幅擴大防止에 努力하고 있는 處지이다 . 西獨의 開發途上國에 대한 經濟協力은 每年 國民所得의 0.8%로 最近年間 7 億弗에 達하고 있고 1964 年以後로는 民間資本輸出促進措置로 民間資本에 의한 援助增加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

東獨은 元來 獨逸의 「後進農業地域」이 있을 뿐 아니라 社會經濟構造의 變革과 戰後 蘇聯에 대한 賠償金 150億弗支拂義務의 履行 등 어려운 條件下에서 經濟開發을 推進하는데 있어 難關이 겹쳤기 때문에 自國의 工業化政策에 置重하여 왔다.

그러나 東獨도 東歐共産國의 有數한 經濟國家로 成長하여 1955年~1967年間에 貿易總額이 約2.7倍로 增加하였고 輸出伸長이 顯著하여 每年 輸出超過를 記錄하고 있다. 1950年 對社會主義諸國과의 貿易額은 約27億 「마르크」로 總貿易額의 73%를 차지했으며 1962年~63년에는 거의 80%를 그리고 1967년에는 75%를 占하고 있으며 1950年~1967年間에 貿易額은 7.5倍로 增大하였다. 蘇聯이 最大의 貿易 「파트너」로써 1967년에는 交易額이 118億6,700萬 「마르크」로 增大하였다. 「코메콘」國家와의 貿易도 1964年 196億100萬 「마르크」에서 1967년에 16%增加했으나 對外貿易額에 대한 相對的比重은 1964년의 73%에서 69%로 減小했으며 OECD諸國과의 貿易比重은 8%에서 10%로 그리고 기타 世界와의 貿易比重도 10%에서 12%로 각각 增加하였다.

東獨의 對OECD諸國과의 貿易額은 1962年 12億7,500萬 「마르크」에서 1967년에는 26億1,600萬 「마르크」로 約110%增加하고 그중 EEC國家와의 貿易總額(西獨除外)은 1962年 4億800萬에서 1967年 9億9,000萬 「마르크」로 約130%增加하였다. 같은 期間에 兩獨間 貿易規模도 17億3,200萬 「마르크」에서 26億 6,500萬 「마르크」로 53.9%增加하였다. 그러나 東·西獨間交易은 OECD諸國 特히

EEO 諸國 과의 貿易 成長에 比해 相當히 낮은 成長率을 表示하고 있다 .

(3) 政治的 接觸

民族分斷狀態의 變化 또는 克服을 爲하여 可能한 理論的 方法은 市民戰爭 또는 世界戰爭 등 暴力的 手段을 통하여 分斷狀態의 變化를 追求하지 않는다면 分斷國 周邊의 強大國의 影響에 의한 間接的 解決方法과 分斷國 相互間의 直接的 接觸에 의한 直接 解決方法 등 두가지 方法이 있다 .

間接的 方法의 境遇, 獨逸은 兩獨逸國家의 媒介 또는 壓力에 의해 「포츠담」協定에 따른 二次大戰後 四大獨逸 占領國, 적어도 兩超強大國인 美·蘇가 意見一致하여 講和條約會談을 통해 分斷狀態를 變化시킬수 있을 것이며 기타 다른 間接的 形態로서는 「유엔」의 媒介行動을 통한 分斷狀態의 變化를 생각할 수도 있다 .

分斷狀態變化의 直接的 解決方法은 「兩獨逸國家」의 直接的 協商을 통한 方法이다 .

勿論 이 境遇에도 1945年 8月 「포츠담」協定 四大強國 (美·蘇·英·仏)의 默視的 寬容이 前提되어야 한다 .

西獨은 1947年 「뮌헨」에서 開催되었던 全四大強國 占領地域의 州首相會議가 失敗도 돌아가 1948年, 1949年 獨逸의 經濟的·法的 政治的인 分斷이 成立된 이후 여러가지 人間的인·經濟的인 그리고 文化的인 接觸이 이루어졌음에도 不拘하고 政治的 責任 「레벨」에서는

1966년까지 東·西獨間의 一方的인 獨白이 있었을 뿐 하등 鐵의 帳幕과의 對話나 協商이 없었다. 단 하나의 例外가 있다면 1955年과 1956年 10月에 西獨財務相「프리트츠·셰퍼」가 秘密使命을 띠고 東獨에 入國하여 東獨國務相「빈센즈물러」와 一種의 「베네룩스」國家 類型에 따르는 國家間協力可能性을 論議한 바가 있을뿐이다. 西獨政府, 議會, 議會內의 主道の政黨들은 西獨의 單獨代表權을 위협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東獨의 協商提議를 回答하지 않고 默殺시키는 이른바 「휴지통에 집어 넣는 策略」을 堅持하여 왔다. 따라서 東·西獨의 政治的 內容의 接觸과 東獨政權의 事實上 내지 法的承認의 立場은 政治的으로 意味없는 集團에 의하여서만 제기되었다.

政治的次元에서의 東·西獨接觸에 관한 論議는 1966年 2月 7日 東獨의 「社會主義統一黨」(SED 共產黨)이 當時 野黨의 立場에 있었던 「西獨社會民主黨」에게 公開書翰을 보내어 「各各獨逸의 다른 部分」(正式國家名稱呼稱察避)에서 公開講演을 하기 위한 兩政黨間의 演士交換을 提議하므로써 本格化되었다.

1966年의 演士交換論議는 좌절 되었으나 이 經驗은 (1) 國際政治와 獨逸問題와의 關聯性 (2) 東西獨指導集團의 狀況判斷 (3) 東西獨에 있어 目的葛藤을 內包한 獨逸分斷問題에 관한 基本主張의 立場差異 (4) 이러한 基本立場의 差異가 있을 境遇 對談交流의 困難性 (5) 聯邦議會選舉와 關聯된 統一政策의 立場이 統一政策에 미치는 直接 間接的 影響등등이 東·西獨政治接觸의 多樣한 條件들의 一部임을 考慮하여야 하였다.

當時 東·西獨接觸 論議가 提起되자 異質體制下的 接觸試圖를 無意味하다고 主張하는 者도 許多하였으나 「키신거」西獨首相은 歐洲平和秩序樹立을 위한 緊張緩和政策以外的 다른 解決策이 없다는 立場에서 「브란트」外相의 政策을 포기하려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基民黨出身인 「키신거」의 立場은 冷戰政策의 持續을 不可能케 하는 与件의 反影으로서 結果적으로 1969年 9月の 總選舉에서 社民黨과 自民黨進歩派와의 聯立下에 「브란트」政權의 形成과 연결되는 過程이었다. 이러한 展開過程에서 볼때 1966年을 계기로 西獨과 東獨內에서 兩獨間의 相互關係形成을 위한 相異한 概念들이 나타났는바 이 概念들은 兩獨間의 關係를 위해 생각할 수 있는 可能性들이다.

첫째 再統一 및 合併의 政策概念 밑에서 西獨은 自由選舉를 통한 東獨의 合併을 主張함으로써 東獨現地域들의 加入을 통한 西獨의 領土的擴大를 企圖하였으며 東獨은 社會主義革命을 통한 西獨의 合併으로써 西獨에 이른바 「民主的인 中央集權主義의 導入」을 企圖함으로써 東·西獨은 相互強硬路線을 堅持하였으며. 둘째 東·西獨相互間의 孤立化政策概念 밑에서 西獨은 自由로히 選出된 唯一한 獨逸政府로서의 單獨代表權을 要求하고 「할슈타인」原則을 固守하고 西獨內에서 東獨人의 政治的目的을 위한 活動을 禁止하는 概念이 提起되었으며 東獨은 역시 「社會主義獨逸平和國家로서의 單獨代表權을 主張하며 西獨을 平和교란자로 規定하는 煽動政策을 自행하고 障壁構築, 銃殺命令 및 往來禁止措置에 의한 西獨에 대한 閉鎖概念이 대두하였다. 셋째 東·西獨問題의 中間解決段階로서 相對國家에

대한 事實上의 承認이라는 政策概念 밑에 西獨은 相異한 社会体制을
갖인 兩個의 「肢體國家」概念을 제기 하였으며 東獨은 「獨逸民族」의
두 國家概念」을 도입하였다. 이 段階에서 東·西獨은 (1) 全權代表
의 相互交換으로 「規制된 並存」이 可能하며 (2) 東·西獨間 諸般分
野의 共同委員會의 構成이 可能하며 (3) 段階計劃을 통한 聯政國家
또는 國家聯合을 構成하며 (4) 臨時國民會議의 召集時에 西獨은 住民
數에 따른 議席數를 主張하고 對東獨接近을 통하여 東獨体制의 變化
可能性을 기대하며 東獨은 東·西獨間的 同等한 議席數를 主張하며
歷史法則에 立脚한 西獨社會政治体制의 變化를 기대하는 概念들이 제
기되었다. 끝으로 國際法上의 承認이라는 政策概念 밑에서 西獨은
主權을 갖인 東獨과의 自由往來(오지리式解決) 概念을 제기 하고 東
獨은 政治的統制는 勿論 現存하고 있는 狀態下의 往來概念을 제기 하
였다.

이와같은 東·西獨政治接觸의 基本概念 밑에서 東·西獨關係가 展開
되어 왔다. 1966年 西獨政府의 獨逸政策路線은 「同一性理論」에 立脚
해 있었다. 獨逸帝國은 1945年에 斷切된 것이 아니라 西獨이 이
를 繼承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理論으로 부터 四大國責任論·
單獨代表權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見解에 의하면 1945年 戰勝
國들의 「포츠담」 協定에서 表明한 獨逸의 統一을 保障 또는 確立
한다는 四大國責任은 그들이 獨逸民族에게 自決權을 즉 全獨에 걸친
自由選舉를 保障하기 위해 強要된다는 것이다. 그 경우 獨逸民族의
自由로운 決斷은 「蘇聯占領地域에 있는 共產政權을 無力化 하고 獨逸
民族의 政治的統一을 確立할 것이라 한다. 1955年 獨逸條約第7條

에 의해 西方強大國도 獨逸의 再統一을 支持할 義務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合併概念의 結果는 獨逸政策에 있어 東獨의 不承認, 東獨의 孤立化를 意味한다. 이러한 不承認의 政治는 東獨의 地位 向上을 막고 四大國責任을 弱化시키지 않기 위해 東獨과의 모든 政治的接觸을 배제한다. 겨우 伯林通過查證에 관한 協定 등 技術的 問題의 合意만이 可能하며 統一問題에 관해 東獨政府와 協商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이러한 東獨의 孤立化政策의 結果로서 東獨體制의 弱化的 징후가 增加한 경우에만 論理的 合理性을 發見할 수가 있다.

그러나 東獨은 1961年부터 해가 갈수록 經濟的安定化와 더불어 政治體制도 더욱 鞏固化 되어 갔다.

東獨體制의 安定化와 더불어 西獨의 院外에서 事實上的 承認形式으로 東獨에의 接近을 支持하는 사람들 數가 增加하였다. 이에 따라 國法分野에서는 過度期間 동안 「두個의 部分秩序」 即 두 國家 내지 臨時政府를 形成한다는 「部分秩序理論」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接近概念의 理論的出發點은 (1) 事實上 「2個의 獨逸部分國家」가 存在하여 (2) 이 「두部分國家間」의 結合은 가까운 時期에 不可能하며 (3) 그러나 接近과 接觸의 포기는 緊張을 強化하고 分斷을 永久化하며 獨逸人의 結合을 파괴하고 모든 離散家族의 生活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部分秩序理論概念」의 도입은 統一에 이르기까지의 一種의 「暫定的政策」이다.

이러한 過程을 통하여 東獨에서 「에곤·바로」의 主張과 같이

「接近을 통한 變化」 現狀이 發生할 수 있고 1966年 當時 西獨의 副首相이며 自民黨 黨首이었던 「멘데」의 表現과 같이 「民主化와 휴머니즘化의 過程」 이 發生할 수도 있으며 東·西獨政治問題의 聯邦式中間解決方法으로 「全獨混成委員會」를 構成할 수도 있다는 論理的發展을 하고 있다. 當時 「브란트」社會黨 黨首도 이와 類似한 概念으로 「兩地域의 資格있고 規制되고 時間적으로 制限한 共存」을 兩獨關係로 設定하였다.

그리고 1965年 1966년에 西獨個別言論人과 西獨大政黨들內에서 거의 모든 곳에서 國際的承認을 獲得하고 있는 西獨과 거의 모든 곳에서 國際法的承認을 獲得하기 위하여 鬭爭하고 있는 東獨間에 形式的 實質的同等權이 없는 實情에도 불구하고 東獨承認概念을 포방한 것은 그나름대로의 政策的目的이 있었다. (1) 東獨이 第2의 獨逸國家로 尊重받지 않은 경우 承認없는 單純한 接觸은 지속적인 成果를 초래하지 못하며 (2) 二次世界大戰結果로서 兩獨逸國家가 成立하였으며 相異한 社會體制를 所有하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全獨秩序로 接近하는 「第三의 方途」 및 「再統一」을 위한 機會는 과도적으로 東獨을 事實上 承認하지 않고는 考慮의 余地가 없으며 (3) 만일 不承認政策을 繼續할 경우 兩獨間의 潛在的인 갈등은 對決의 가속化現狀을 초래하여 새로운 伯林危機의 造成 등 政治的不案을 조장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東獨은 蘇聯의 지지로 해가 갈수록 國際法的 承認獲得概念에 執着하고 1945年 獨逸帝國은 沒落하고 「두個의 獨逸部分國家」가 成立

하였음을 지지하는 立場을 취하였다.

다만 承認獲得 概念도 合併概念 및 接近概念과 같이 獨逸統一의 達成이라는 窮極的目的을 포기 하지 않았다.

獨逸政策에 있어서의 轉換의 계기는 1966年 東獨社會主義統一黨 (共産黨)이 西獨社民黨에 보낸 演士交換提議에서 비롯된다.

1964年末 「모스크바」에서 「人民戰線策略」을 다시 活動化시킬 생각을 하게 되고 東獨이 西獨의 「에어하르트」政權下에서의 「經濟危機」로 不安하게 된 西獨에 影響力을 作用할 수 있는 希望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서 西獨接觸問題를 위한 새로운 狀況이 發生하였다. 이에 東獨社會主義統一黨은 人民戰線策略에 따라 1966年 當時 野黨이었던 社民黨을 公式接觸을 위한 對象集團으로 選擇하여 相互演士交換을 提議하기에 이르렀다. 當時 社民黨은 獨逸政策의 脫出口으로써 東獨과의 關係改善을 論議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當時에는 「에어하르트」政府의 東獨孤立化試圖가 1963年 12月 18日 「브란트」西伯林市長에 의한 伯林通行查證에 관한 協定締結에 의하여 緩和되고 東獨은 1965年 12月 17日 西獨의 全獨省과 有似한 國內機構를 마련하므로써 西獨關係는 점점 相互間의 孤立化 또는 東獨의 國際法上的 承認要求에 대하여 西獨의 外交的承認없이도 事實上의 東·西獨協同狀態로 이양될듯한 政治的環境이 造成되었다.

東獨 共産黨指導層이 社民黨에 대하여 차별없는 條件下에서 接觸提議書翰을 보내기로 決定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狀況判斷의 要因들이 決定的으로 作用하였을 것이다. (1) 西獨內에서 統一에 관한 論議와 分斷을 固着시키는 政治間的 不一致에 관한 不滿

의 增加.(2) 西獨「루르」地方에서의 構造危機가 초래한 失業과 經濟的後退의 징후 (3) 西獨國內政治에 있어서 社民黨의 位置 卽 1965年가을 總選에서 小聯政成立을 可能케 한 「에어하르트」의 勝利와 이로 因하여 基民黨政治로 부터 두텁이 分離되는 새로운 政策을 포방하여야 될 社民黨의 立場에 東獨의 社會主義統一黨은 影響力을 발휘하려 하였다. 基民黨政治로 부터 脫皮하려는 社民黨의 立場은 同年 6月 「도르트문트」에서 開催된 社民黨々大會에서 明白히 露出되었으며, 1966年에 社民黨內部에서 基民黨과 社民黨間의 「共同步調」政策과 「헤르베르트. 베너」의 選舉策略과 指導方式에 대한 批判의 增加로서 明白히 露出되었다. (4) 끝으로 東獨社會主義統一黨의 提議는 對美接近을 試圖하고 있는 蘇聯의 諒解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東獨社會主義統一黨은 社民黨이 지난날 여러接觸提議에 對하여 13회에 걸쳐 回答을 하지 않았다는 事實과 다시 回答을 하지 않을 경우 外部에 對하여 東獨의 立場을 宣傳할 수 있음을 計算에 넣었다.

따라서 東獨社會主義統一黨이 社民黨代議員과 黨員들에게 發送한 公開書翰은 거의 모든 共產主義宣言과 마찬가지로 장황한 內容이었다.

(1) 社民黨은 基民黨과 同類의 政策으로는 住民多數에 影響을 미치는 政治的目的을 達成하지 못한다.

(2) 社民黨은 兩獨逸國家政府들間的의 協商에 贊同하는가? 講和條約의 準備와 內容에 對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社民黨이 追究하는 統一政策은 무엇인가? 등의 質疑를 제기하고 (3) 獨逸分斷의 克服을 위한 突破口를 만들기 위하여 1966年中 政黨과 結社들이 參與하는

「大全獨 諮問機構의 樹立을 제외 하고 (4) 西獨의 社會主義的變革을 勸誘하는 內容이 었다 .

이처럼 事實的提議와 共產主義宣傳을 混合한 東獨社會主義統一黨의 接近概念과 統一概念의 變形을 실현하려는 試圖는 西獨社會民主黨을 決定하기 어려운 궁지에 몰아넣었다 . 이에 對하여 西獨社民黨은 從來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東獨社會主義統一黨의 提議를 默殺하는 方法과 單獨으로 協商에 나서는 方法 및 西獨聯邦議會內의 其他 政黨들과 共同步調를 取하는 方法등의 可能性이 있었다 . 社民黨은 中 第三의 方法을 採択하였다 .

이 경우 聯邦議회의 自民黨은 東獨의 獨逸自由民主黨이 自民黨에 發送한 書翰에 回答하였고 3月31日에 이미 兩黨의 代表者들이 「바드·홈 부르그」에서 會晤한 바 있기 때문에 社民黨과 共同步調를 取할 것이나 1949年 부터 與黨으로서 東獨不承認政策을 추구하여온 基民黨의 경우는 立場이 달랐다 . 勿論 基民黨內에도 「東獨의 權力所有者와의 公公然한 意見鬪爭」을 贊成하는 西伯林의 基民黨立場도 있었다 . 社民黨指導層은 1966年3月18日 東獨社會主義統一黨에 보낸 第一次公開回信에서 協商을 어렵게 함에 틀림없는 수많은 非難點 예를 들면 銃殺命令 , 東獨에 있어서의 社民黨의 禁止 , 伯林障壁 , 自由往來의 防害 , 基本法의 「自由民主」秩序의 持續 , 協商에 對한 聯邦議회의 管轄權 , 東獨에 있어서의 社民黨書信의 公用등을 言及하였다 . 이후 東獨社會主義統一黨의 갖은 計策과 壓力에도 不拘하고 社民黨指導層은 聯邦議會諸政黨의 共同行動을 포방하였 으며 社民黨々首 「브란트」는 黨代議員들에게 「獨逸社會主義統一黨」

과의 對決의 前提로서 西獨에 있어서의 「政治勢力들의 合意의 必要性」과 「社民黨의 党内秩序를 呼訴함으로써 社民黨々大會는 演士 交換을 滿場一致로 받아들이기 위해 東獨社會主義統一黨의 提議를 拒否하였다.

社民黨이 이와같이 聯邦議會 諸政黨間의 共同步調政策을 挾하자 東獨의 「올브리히트」와 기타 演士들이 西獨에 旅行을 수 있느냐 하는 問題가 基民黨에 의하여 西獨聯邦議會에서 거론되었다. 그리 하여 1966年 6月 23日 이른바 「期限付行爲安全法」이 通過되기도 하였으나 社民黨의 共同步調策略후 이러한 法論爭은 다시 낡은 不承認概念과 孤立化概念을 관찰시켰기 때문에 東·西獨間 演士交換의 實現可能性은 더욱 制限되었다. 이와같이 1966年の 東·西獨政黨間의 演士交換實驗은 좌절되었으나 그 過程의 對話는 1966年 12月부터의 「키신거-」 「브란트」의 大聯政의 새로운 政治에 대해 뜻을 지니게 된 몇가지 認識과 變化를 초래하였다. 즉 (1) 東獨政權은 冷戰時代의 全体主義圖式이 달하는것처럼 결코 「劃一的이고 閉鎖的」이 아니라는 點 (2) 東獨政權은 西獨에 影響力을 미칠수 있다고 判斷된 경우 國家的次元에서의 對西獨接觸을 企圖하고 있다는 點 (3) 社民黨은 이번 對話試圖를 통하여 東獨政權不在政策을 단절하였다는 點 (4) 西獨市民大多數가 接觸을 환영하였지만 社民黨은 東獨共産黨과의 單獨對話方法을 挾하지 않고 聯邦議會에서 代表되는 기타 政黨들과 共同行動을 挾한 點 (5) 論議過程에서 法的主張들이 政治的決斷을 회피함에 기여했다는 點이다. 그러나 失敗에 돌아간 政黨間對話는

「아메나워」가 主導한 東獨孤立化政策의 終末을 意味하여 「에어하르트」의 小聯政은 몇 週後 經濟政策失敗로 瓦解되었고 大聯政의 樹立을 계기로 全獨接觸問題의 새로운 段階에 突入하였다.

西獨의 對東獨接近戰略은 理論上 두가지 相異한 方式을 想定할 수 있다. (1) 東獨의 承認問題를 부각시키지 않고 全獨接觸을 強化시켜 접증적인 相互間의 事實上 承認과 동시에 分斷된 獨逸에서의 人間的 便利化를 증진시키는 戰略과 (2) 우선 東獨을 國家承認하고 그 結果로서 東·西獨間의 關係改善과 人間的 生活의 便利化를 圖謀하는 戰略이다. 1966年 東獨 社會主義統一黨과 西獨 社民黨間의 相互演士交換 試圖는 前者의 범주에 속한다.

1966年 12月 「본」에 基民黨과 社民黨의 大聯政이 形成되고 大聯政은 社民黨이 提示한 8個項綱領에 따라 첫째의 戰略에 立脚하여 東獨을 承認하지 않고 東·西獨接觸을 強化하는 攻勢的 政策을 促求하였다. 社民黨은 1966年 11月 11日 聯政參與의 前提條件으로서 8個項要求條件을 내 걸고 이 中에서 東獨에 대한 承認없는 「攻勢的 政策」을 要求하였으며 大聯政은 이에 따라 東方政策을 遂行하면서 東獨 孤立化를 追求하여 1967年 1月 31日 「루마니아」와 修交協定을 締結하고 1967年 8月 3日 「체코」와 通商文化協定을 締結하였다. 이 協定 原文에서 西獨은 西獨의 單獨代表權을 疑問視하는 表現을 使用함에 讓步하고 1968年 1月 29日에는 1957年 「할슈타인」原則에 의하여 斷切되었던 「유고」와 外交關係를 再樹立하였다. 이 와같이 「第2의 獨逸國家의 承認」이 아닌 現實的인 政策概念은

1969年 9月 에 이르기 까지 聯立政治의 土台를 이루었다 . 이것은 「슈뢰더」外相下에서 시작된 「東方의 開放」政策의 지속을 뜻했으나 差異點은 西方國家와 中立國家에 대한 西獨의 單獨代表權의 維持下에 東獨을 孤立化시키지는 않는다는 兩面的性格을 內包한 政策이다 .

한편 「슈토프」東獨首相은 1967年 5月 10日 「키신저」首相에게 書翰을 보내어 (西獨首相에게 發送한 12回 제의 書翰) 兩獨逸國家間의 關係正常化에 관한 協商을 提議하였다 . 「키신저」西獨首相은 1967年 6月 13日 字回信에서 兩首相會談의 開催보다 東·西獨代表團間의 對話를 提議하였다 . 그러나 「슈토프」東獨首相은 1967年 9月 18日의 第2 書信에서 「東獨과 西獨間의 關係正常化樹立에 관한 條約案」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協商을 提議하였다 . 「슈토프」東獨首相은 이 東·西獨間關係正常化條約案에서 東·西獨關係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의 諸原則을 根本적으로 適用하는 關係」 및 「平和의 共存과 段階的接近을 促求하는 獨逸民族의 主權國家間의 關係」라고 規定하였다 .

이후 東獨은 東獨의 事前的 國際法의 承認없이 는 西獨政府와의 모든 對話를 拒否하였으며 1967年 4月 26日의 「카알스바더」共産黨 및 勞働者政黨들의 宣言에서 「東獨의 承認과 東獨政權의 防衛가 歐洲安保를 위한 鬪爭의 主課題」라고 宣言하였다 .

東獨의 國際法의 承認要求政策은 對西獨政策의 가장 核心의 主流를 形成하는것으로써 政治·經濟等 國內의 与件에서 東獨이 西獨보다 열세

에 놓여 있는 東·西獨分斷現況의 特殊立場에서 起因된 것으로서 1966年 東·西獨政黨間에 演士交換試圖가 좌절되는 過程에서 1966年 6月 「올브리히트」가 西獨「期限付行爲安全法」의 이론바 「侵略的이고도 國際法 違反的인 單獨代表權」을 비난한데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西獨의 單獨代表權要求와 兩獨間의 接近政策을 維持하려는 兩面政策의 所産이기도 한 것이다 .

東獨은 西獨에 의한 東獨의 國際法的承認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國內的 態勢를 強化하였다 . 1967年 2月2日에 「全獨問題省」을 「西獨問題省」으로 改名하고 1967年과 1968年을 통하여 東歐障營의 「파트너」國家들과의 雙務條約締結을 통하여 東獨을 孤立化시키기 위한 西獨의 對東歐圍우회 接近政策을 견제하려고 시도하였다 . 1967年 2月20日에는 東獨의 國民法이 發効되고 1967年 12月12日에 東獨人民議會는 西獨과의 共同性을 規定한 宗래刑法條項을 제거시키는 새로운 刑法典을 의결하였고 1968年 3月10日의 規定에 의하여 「네오나찌」黨員을 그리고 1968年 4月13日의 規定에 의하여 西獨政府構成員과 官僚의 西伯林에로의 通過旅行을 禁止하였다 . 1968年 6月13日에는 西獨間往來에 있어서 「비자」制規定이 도입되고 東獨은 西獨의 新聞提供提議를 拒絕하였다 .

大聯政의 獨逸政策은 國家的承認을 結 밑에서 實行된 것으로서 東獨과의 接觸은 事實上 東獨을 承認하는 모험을 內包한 攻勢的 政策이라는 點에서 먼저 國際法的 承認을 하고 다음에 協商을 하자는 東獨의 立場과 對立 되었으나 既存政策으로 부터의 方向轉換이 있음은

틀림없다. 이러한 政策決斷은 예기치 못한 副作用을 가져왔다.

(1) 對東獨政策에 있어서의 西獨의 보다 強力한 活動은 全獨逸問題에 對한 西方聯合國 責任의 相對的인 弱화를 초래하였고 (2) 國內政治面에서 東獨 및 戰後國境線의 完全한 承認을 바라는 소리가 增加하였으며 (3) 對東獨接觸試圖의 增加와 더불어 他國家들이 西獨이 主張하는 東獨에 對한 國際法的 不承認을 緩和하려고 하기 때문에 西獨의 主張은 점점 더 非現實的인 理論으로 되고 (4) 「할슈타인」原則의 경련성에서 벗어나려는 對東獨政策의 모험은 不得已 大聯政內에서의 葛藤을 초래하였다.

西獨의 對東獨接近政策은 國內政治的 「잇슈」로 提起됨으로써 더욱 本格化되었다.

1969年 9月의 總選舉에서 全獨接觸問題는 곧 選舉前哨戰의 争点으로 登場되었다.

總選舉에 臨迫하자 兩獨接觸問題가 選舉의 争点으로 登場하여 1969年 9月 26日 聯邦議會에서 自民黨이 西獨의 單獨代表權에 異論을 제기하였다. 自民黨의 「켈」(現西獨外相)은 西獨의 單獨代表權에 뿌리박고 있는 大聯政의 統獨政策을 批判하고 自民黨과 東獨과의 「一般條約締結案」을 議會에 提出하였다.

社民黨內에서도 接觸問題는 選舉前哨戰問題로 제기되었다. 「슈레스 비히·홀슈타인」州 社民黨組織과 「헛센」南部의 社民黨支部는 社民黨幹部와는 달리 東獨과의 國家的接觸을 要求하였다. 그리고 社民黨은 1969年 4月 「바드·고메스 베르그」 臨時黨大會에서 비로

소 (1) 「東·西獨間의 規制된 併存에 合意하고 (2) 東獨의 國際法的承認要求의 拒否와 (3) 「兩政府次元에서의 協商」에 合意를 보았다. 이에 對하여 基民黨의 一部는 東獨의 철저한 孤立化라는 낡은 「아메나워」路線을 옹호하였다. 「東獨을 承認하고자 하는 者는 伯林을 포기할 勇氣를 갖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물러. 헤르만」基民黨院內總務는 특히 自民黨을 비롯한 東·西獨一般條約締結支持者들은 「東獨側의 *빨치산*集團」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런 對立背景에서 東·西獨接觸問題에 있어서 野黨의 位置에 있었던 自民黨과 大聯政의 社民黨間에 基民黨의 強硬路線에 反對하는 聯合戰線이 形成되었다. 1969年 4月 25日 聯邦議會에서 獨逸政策과 自民黨의 「一般條約締結案」에 대한 論爭이 벌어졌을때 西獨의 單獨代表權을 옹호한 基民黨에 대하여 「슈미트」社民黨院內 總務는 「用語의 崇拜를 警告하였고 當時 全獨相이며 社民黨院內總務였던 「베너」는 用語論爭이 狀態改善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野黨으로서의 自民黨과 大聯政間에서 協商機會의 評價에 있어서 明白한 差異가 있었다. 自民黨은 成果있는 協商이 기대될 수 있다는 希望에서 결코 國際法的承認은 아니나 國法上的 承認을 하는 條約締結提議를 원하였으며 이에 對하여 우선 協商이 成立되고 그 結果로서 東·西獨間一般條約이 成立될 수 있다는 것이 大聯政의 見解였다.

1969年 9月 28日의 總選舉結果는 社民黨과 自民黨進歩派의 聯立으로 「브란트」政權을 탄생시켰다. 基民黨을 패배시키고 執權한

「브란트」首相은 1969年10月28日 就任 演說에서 東獨首相에게 「條約上合意된 協同에 이 팔 政府次元에서의 差別없는 兩側의 協商」을 새로히 提議하였다. 「브란트」政府는 東獨의 國際法上的의 承認을 拒否하였으나 「獨逸內에 兩個의 國家가 存在하며 이 國家는 相互 外國이 아니고 이 兩個獨逸國家의 關係는 서로 特殊한 關係」라고 宣言함으로써 東獨을 國法上的의 뜻에서 하나의 國家로 承認하였다.

이어서 「브란트」首相은 1970年의 年頭敎書에서 (1) 「獨逸에 對한 四大強國의 責任」, 「伯林의 特殊한 地位와 西獨과의 紐帶關係」 「東獨의 國際法的承認은 아니나 差別없는 政府次元에서 兩獨逸國家間 協同을 위해 條約을 締結할 意思」가 있고 「東·西獨相互間에 武力行使拋棄協定을 맺을 意思」가 있음을 表明하고 (2) 既存同盟關係의 解体는 있을수 없음을 말하고 自決權과 歐洲秩序內에서의 民族的統一性과 平和追求決意를 表明하였으며 (3) 大聯政下의 經驗에 비추어 蘇聯과 「포랜드」와의 武力行使拋棄協商意思를 表明하고 (4) 「헝가리」와 「체코」와의 關係改善意思를 表明하였으며 (5) 특히 東獨(DDR) 政府와 同等權, 無差別原則下에서 武力行使拋棄協商을 提議하였다.

그리고 西獨政府의 獨逸政策의 基本原則으로서 東·西獨은 獨逸民族의 統一性を 維持할 義務를 지고 相互外國이 아니며 그 外에는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家間의 法の 原則이 効力を 갖어야 한다고 宣言하였다.

「브란트」西獨首相은 1970年 年頭交書에서 밝힌 바에 따라 1970年1月22日 東獨首相에게 書翰을 보내어 平等한 「파트너」

의 基盤위에서의 對話를 제의하고 「에콘프랑케」를 協商者로 任命 하였으며 이 書翰에 對하여 1970年 2月 11日 東獨의 「슈토프」首相이 回信을 傳達하여 國際法的承認下的 規制된 共存과 東·西獨의 「유엔」加入을 強調 하였으며 1970年 2月 19日 「브란트」首相을 東伯林으로 招待 하였다 .

이리하여 1970年 3月 12日 東·西獨代表의 「코뮤니케」에서의 合意에 따라 1970年 3月 19日 東獨의 「에어프르트」에서 第1次 東·西獨首相會談이 開催 되었다 .

이 會談에서 「브란트」西獨首相은 다음과 같은 立場을 다시금 強調 하였다 .

(1) 東·西獨은 獨逸民族의 統一性을 尊重할 義務가 있고 동시에 東·西獨은 相互 外國이 아니며 (2) 그 外에는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 특히 모든 差別排除, 領土保全의 尊重, 모든 紛爭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義務 및 兩側境界의 尊重義務原則 등은 効力을 가지며 (3) 條約當 國의 社會構造와 制度를 相互 尊重하며 (4) 東·西獨政府는 善隣的 協調 특히 專門技術的인 協調를 위해 努力하며 (5) 全體로 서의 獨逸과 伯林에 關한 四大國의 既存責任이 尊重되어야 하며 (6) 伯林問題 解決을 위한 四大國의 努力을 支持한다는 內容이다 .

이 東·西獨 「에어프르트」頂上會談에서 東獨은 다음事項을 要求 하였다 . 即 ① 國際法 基盤위에 立脚한 그리고 如何한 差別도 없는 東·西獨間의 正常的이며 平等한 關係樹立 및 單獨으로 獨逸民族을 代表한다는 西獨政府의 主張을 拋棄하고 (2) 東獨과 他國家와의 外交

關係維持에 西獨은 不干涉함으로써 「할슈타인」原則을 拋棄하며
(3) 「유엔」憲章第 2 條 4 項에 따른 東·西獨間의 法的主体·領土의 保全
및 境界線不可侵原則의 完全하고도 平等한 承認下에서 暴力行使를
拋棄하고 (4) 東·西獨의 「유엔」加入을 申請하며 (5) 如何한 形態
로든지 核武器의 所有를 拋棄하고 國防費의 50 % 節減 등이다 .

「에어프르트」頂上會談을 끝내고 1970年 3月 20日 「브란트」西獨
首相은 議會演說에서 「에어프르트」會談은 東·西獨政治接觸의 具體的
始作이지만 實際的成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皮력하였으며
「슈토프」東獨首相은 1970年 3月 21日 東獨人民議會에서의 報告에서
「브란트」의 統獨政策이 策略의 變化뿐인지 그렇지 않으면 西獨의
政策轉換을 意味하는것인지 밝혀야 하며, 그 境遇 西獨指導層과 社民
黨指導層이 基民黨의 낡은 目的設定과 一致하지 않음을 浮刻시켜야
한다고 發言하였다 .

「에어프르트」東·西獨頂上會談은 1970年 5月 21日 西獨의 「캄셀」
에서 第 2 次會談을 開催하자 는데 合意를 보았다 .

이 「캄셀」會談에서 「브란트」西獨首相은 東·西獨政治接觸의 基本
的立場을 밝힌 有名한 「20 個項目」提議를 하였다 . 이 「20 個項目」
은 分斷國政治接觸의 「모델」로써 상세한 검토가 요청된다 .

(1) 東·西獨의 憲法에서 말하고 있는 民族의 統一性을 吟味하면서
民族의 平和 및 統속을 위하여 東·西獨關係를 規制하는 條約을
締結한다 . (2) 이 條約은 東·西獨의 憲法規定에 따라 각각 東·
西獨立立法部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3) 兩條約當事國은 人權·同等權 .

平和로운 共同生活과 無差別原則을 基盤으로 한 國際法의 一般的原則下에 關係를 設定할 意思를 公表하여야 한다.

(4) 條約當事者は 相互暴力의 위협 또는 행사를 拋棄하고 모든 問題를 平和의 手段으로 解決할 義務를 진다.

(5) 兩側은 國內最高權力에 該當하는 事項에 있어 두나라 各者의 獨立性과 自主性을 尊重한다 (6) 東·西獨國家의 어느나라도 결코 다른나라를 代身해서 行動하거나 代表하지 않음을 宣言한다.

(7) 條約을 締結하는 當事者들은 결코 獨逸땅에서 戰爭을 일으켜서는 아니됨을 宣言한다. (8) 條約當事者들은 民族의 平和로운 共同生活을 妨害하는 모든 行爲를 中止할 義務를 진다. (9) 條約當事者들은 歐洲安保를 強化함에 이바지하는 軍縮과 軍備統制를 위한 모든 努力을 支持할 意思를 確認한다. (10) 條約은 第2次大戰의 結果와 獨逸人은 두나라에서 살고있으나 한 民族의 構成員이라는 特殊한 地位로 부터 出發하여야 한다. (11) 伯林과 全獨逸에 對한 4大國의 責任은 그대로 남는다. (12) 伯林과 獨逸에 關한 4大國의 合意는 尊重되어야 하며 이는 西伯林과 西獨間에 맺어진 關係에 대하여서도 該當된다. 兩側은 伯林과 伯林周邊의 事態正常化를 위한 4大國의 努力을 支持할 義務를 갖인다.

(13) 兩側은 兩國家 어느 部門의 立法間에 抵觸이 있는가를 吟味하

여 兩國家와 市民의 不利를 避하기 위해 그 抵触되는 것을 除去하도록 한다. 이 경우 各當事者의 最高權이 自己國家領域에 局限한다는 原則으로 부터 出發한다.

(14) 條約은 相互往來를 擴大하고 獨逸住民의 居住移轉의 自由를 追求한다 (15) 離散家族問題가 解決되어야 한다. (16) 東·西獨共同 競界線의 地域들은 그 곳에서 發生하는 問題들을 善意的으로 解決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兩側은 査訊, 情報交換, 學問, 教育, 文化, 公害問題 및 「스포츠」 등의 交流에 있어 相互間의 利害에 따라 協力を 強化하고 擴大함은 勿論 이들의 細目에 關하여 協商할 것을 確認한다. (18) 兩側間의 通商에 있어서 既存協定은 効力を 가지며 通商關係는 繼續 이루어져야 한다. (19) 兩政府는 長官級의 全權代表를 任命하고 이들의 事務所를 設置하며, 이들의 課業을 仔細히 確定한다.

이들에게는 各政府가 있는 곳에서 事務를 볼 수 있는 可能性이 부여되고 必要한 便利와 特權이 保障되어야 한다.

(20) 兩側은 그들 間에 合意하게 된 條約의 土台위에서 國際組織들에의 加入과 協力を 規制하는데 必要한 手段을 講求해야 한다.

한편 東獨首相 「슈토」 는 國際法의關係에 立脚한 條約의 締結이 東·西獨間의 平和共存關係를 招來할 수 있는 基本的인 事項이라고

指摘하고, 東獨人民은 自決에 의하여 「나치즘」, 軍國主義 및 帝國主義를 뿌리뽑아 내어 「포츠담」協力の 履行을 注視한 데 反하여 西獨은 지난 25年 동안 「히틀러」 「파시즘」의 滅亡結果를 認定하려 들지 않았으며 第2次大戰結果로 成立된 歐洲에 있어서의 競界線들(東獨과 西獨間의 境界線을 包含해서)을 留保없이 窮極的으로 承認해야 할 不可避한 必要性을 西獨政府는 如前히 否定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1) 西伯林은 西獨에 屬하지 않는 獨立된 政治的單位体이며 (2) 東·西獨은 國際法에 따르는 同等權을 保有하며 (3) 東·西獨間의 經濟關係는 對外的經濟關係이며 (4) 東·西獨元首間에 同等한 國際法的關係樹立에 관한 原則的合意가 成立되기 이전 에 第2級 또는 第3級問題의 諮問을 위하여 委員會 또는 代表部를 設置하는 것은 事實의 核心을 벗어난 西獨의 戰術的目的을 表示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라고 主張하여 東獨의 國際法的承認을 要求하는 이른바 最大主張을 要求하였다.

이상과 같이 1970年 3月 19日 東獨의 「에어프르트」와 1970年 5月 21日 西獨의 「캄셀」에서 開催된 東·西獨首相間의 最初의 頂上會談을 總괄하여 볼때 「슈토프」東獨首相은 「國際法的關係의 樹立」 「東獨과의 外交關係의 樹立」 즉 東獨의 國際法的承認을 要求하였고 「브란트」西獨首相은 「民族의 統一性」과 兩獨逸國家의

「특수한 種類의 關係」를 強調 하면서 그가 提示한 20個項目에서 東·西獨은 協商을 통하여 可能케되는 條約을 토대로 國際組織에의 加入과 協同을 規制함에 必要한 對備등을 강구할 것임을 申明 하고 있다. 이에 對하여 「슈토프」 東獨首相은 東獨과 西獨間에 소위 內獨特殊關係를 세우려는 西獨의 모든 試圖는 다만 「變化된 形態로서의 單獨代表權」을 維持하여 東獨을 後見함을 目標로 하고 있다 라고 指摘하고 이와같은 公式은 결코 東獨과 西獨間의 모든 差別로 부터 벗어난 同等한 關係를 위한 基盤일 수 없고 따라서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하면서 東·西獨間의 外交關係樹立(「브란트」는 外交關係가 아닌 東·西獨全權代表의 交換을 提議)과 同等한 會員國으로서의 東·西獨의 即時「유엔」加入申請을 要求하였다.

그런데 「슈토프」는 「캣셀」會談即後 西獨에서의 記者會見에서 西獨政府가 基本問題에 있어 「現實主義的」態度를 取할 경우 對話를 持續할 意見を 表明했고 「브란트」西獨首相은 記者會見을 통한 宣言에서 「캣셀」會談의 評價는 「모스크바」 및 「바르샤바」의 對話와 分離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背景 밑에서 現在 東·西獨間에는 一般條約締結을 위한 交渉이 進行되고 있다.

다. 東方政策의 實際

(1) 獨蘇不可侵條約

1950年 美, 英, 仏三國에 의한 對獨戰爭狀態終結宣言, 1955年 蘇聯에 의한 對獨終戰宣言 및 獨蘇外交關係樹立協定이래 1970年 8月 12日 獨蘇間에 武力不行使 및 協力에 관한 獨蘇條約이 正式調印되므로써 (1972.5.17 西獨議會批准) 獨, 蘇關係는 물론 戰後, 歐洲情勢에 劃期的인 轉換을 갖어 왔다.

獨蘇不可侵條約은 西獨「브란트」首相이 展開한 東方政策의 產物로써 西獨은 對東歐國外交에서 「強硬政策」을 脫皮하여 東方外交에 「이니셔티브」를 掌握하게 되었을뿐만아니라 그 經濟力에 相應하는 政治的 發言權을 回復할 段階에 접어들므로써 歐洲의 政治, 經濟의 版圖와 世界政局에 큰 變革을 予見케 하기에 이르렀다.

1969年 10月 21日 首相에 就任한 「브란트」는 施政方針演說에서 東方政策의 일환으로 對蘇武力不行使協定締結의 必要性을 強調하였으며 1969年 10月 29日 「셀」西獨外相은 「할슈타인」原則의 廢棄宣言으로 東歐諸國과의 積極接近政策을 採択하였으며, 이어서 1969年 11月 13日 「슈토프」東獨首相이 西獨과의 國交樹立交渉用意를 表明하므로써 東西獨間對話의 길이 트이게 되었다. 그리고 同年 11月 29日 獨, 蘇交渉에 앞서 核擴散防止條約의 批准을 바라는 蘇聯의 提議를 받아들여 西獨은 이 核擴張防止條約에 調印하였다.

이어서 12月 8日 西獨과 東歐諸國 및 蘇聯과의 빈번한 交渉을 土臺로 드디어 「모스크바」에서 獨, 蘇武力不行使協定予備交渉이 開始되

었다. 1970年5月2日 「셀」西独外相의 非公式訪蘇를 통하여 이루어진 重要問題에 관한 原則的合意를 出發點으로 하여 西独特使「바르」와 蘇聯外相「그로미코」間에 本格的會談이 開始되고 独.蘇條約의 根幹이 된 이른바 「바르.그로미코」案 成案에 成功하여 같은 해 8月12日 独.蘇不可侵條約이 正式調印되었다.

独蘇不可侵條約締結의 對外的要因으로는 東方外交의 基盤造成을 企圖하는 西独과 歐洲의 現狀維持確立을 바라는 蘇聯의 利害가 一致點을 發見한 때문이다.

兩國의 國內的要因으로 西独의 境遇는 勞動者層을 主된 支持基盤으로 하는 社民黨과 본래 「루루」地方의 大資本에 의해 育成된 自民黨이 이른바 小聯政을 이루어 社民黨의 革新的契機와 獨逸의 傳統的市場인 東歐를 確保하려는 一般的인 要求 및 自民黨의 特別한 要求가 独蘇不可侵條約締結의 國內的背景要因을 이루었고, 蘇聯의 境遇는 國內의 經濟不振克服에 全力을 投入하기 위하여서는 安定된 國際環境과 蘇聯 및 東歐의 經濟的 沈滯를 西独과의 經濟科學技術協力を 통하여 挽回하려는 經濟的要求가 우선 背景을 이루고 있다.

西独은 強硬政策이 가져온 外交의 孤立과 統獨機會의 漸次的消滅傾向을 挽回하기 위해서는 對決 아닌 「接近에 의한 解決」方策採択으로 現狀의 永久固定을 막고 平和的方法에 의한 對東歐接近을 試圖하는 것이 보다 現實的이라는 判斷위에

첫째 独蘇不可侵條約締結로서 西独의 安保를 不完全케 하는 가장 큰 要因이 되었던 敵國條項(「유엔」憲章第53條 및 第107條)을 失効케 하고 이로써 蘇聯의 對獨武力介入權을 正式으로 拋棄케 하여

政治的 地位를 回復하고

둘째 이상과 같은 緊張緩和의 基盤을 出發點으로하여 平和的方法에 의한 統獨의 條件을 造成하고 伯林問題解決을 위한 漸次的接近을 可能케 하며,

세째 「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등 東歐諸國과도 類似한 一連의 條約을 締結하는 契機를 造成하고 東歐의 全般的인 緊張緩和를 實現하며 東獨과의 漸進的인 關係正常化를 기도하고,

네째 蘇聯 및 東歐國과의 經濟交流增大로 獨逸의 傳統的인 海外市場을 開拓하고 이로써 그동안 仏蘭西가 主導하였던 西歐의 對蘇對東歐 外交에서 「이니셔티브」를 掌握하며,

다섯째 이상 諸政策의 展開에 步調를 맞추어 西獨의 經濟力에 相應한 政治的 發言權을 回復하고 이로써 將次 西獨나름의 自由外交 實現基盤을 構築하는데 그 目標을 두고 있다.

한편 蘇聯은 첫째 武力不行使宣言 및 「오델 . 나이제」線, 東西獨國境線 등 現 東西歐間의 境界線을 固定시킴으로써 있을지도 모르는 西獨의 「報復主義」에 對한 東歐의 不安을 解消하고 이로써 蘇聯 및 東歐가 國內經濟的沈滯回復을 위해 注力할수있는 國際環境을 造成하며

둘째 深刻한 經濟的沈滯로 부터 西獨과의 經濟 및 科學, 技術分野의 交流를 強力히 바라고 있는 蘇聯은 歐洲共同市場이 擴大되어 歐洲에 強力한 經濟圈이 形成될것이 予想되는 現在 「코메콘」의 指導國家로써 歐洲共同市場의 中心國家인 西獨과의 經濟協力으로 새로운 經濟的 發展을 期待하고

세째 이로써 東歐勢力圈을 實際적으로 固定化하여 西獨으로 하여금

「브레즈네프 . 독트린」을 間接的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結果를 갖어오게 하며,

네째 蘇聯이 長期目標로 追求하여온 歐洲安保會議實現要件을 마련하고 「나토」와 「바르샤바」條約軍間の 相互減軍을 實現하는 일방,

다섯째 戰略的으로는 東歐地域을 安定化하여 앞으로 可能할수도 있는 對中共事態에 對備하려는 것인바 蘇聯의 意圖는 政治, 軍事, 經濟 등 各分野에 걸쳐 廣範圍하고 多様な 性格을 內包하고 있다.

1970年7月 西獨「바로」特使와 「그로미코」蘇聯外相間에 合意된 「바로 . 그로미코」條約案을 基礎로 마지막 손질을 加해 作成된 獨蘇不可侵條約은 大體로 「바로 . 그로미코」案이 그대로 反映된 것이나 西獨이 가장 強調하고 關心을 갖었던 統獨問題및 伯林問題는 前者는 前文과 附屬文항에 包含시키는 形態로 西獨側希望이 實現되었지만 「伯林」問題만은 4大國會議에 넘김으로써 未決事項으로 남겼다. 「바로 . 그로미코」案要旨는 다음과 같다.

(1) 現存하는 事實上의 狀態를 出發點으로 緊張緩和및 關係正常화를 圖謀하고

(2) 「유엔」憲章에 具現된 目的과 原則, 紛爭의 平和的解決, 武力使用禁止의 諸原則을 認定하고

(3) 現國境線認定下에 平和維持可能性을 認識하여 「오델 . 나이제」線 및 東西獨國境線을 認定하고

(4) 本條約은 雙方의 既存條約에 影響을 주지 아니하며

(5) 本條約및 社會主義諸國과 西獨과의 協定은 不可分의 一體이며

(6) 西獨은 東獨과 國際的으로 拘束力을 갖는 協定을 締結할 用意

가 있으며

(7) 緊張緩和와 關係改善을 위해 雙方은 東西獨의 「유엔」加入을 위한 對策을 講究하며

(8) 「문헨」協定の 無効와 기타 關連된 問題는 「체코」와 西獨雙方이 수락가능한 形態로 解決하고

(9) 雙方의 利益과 平和를 위하여 經濟, 科學, 文化交流를 增進하고

(10) 歐洲安保會議의 開催를 위하여 可能的한 모든 措置를 取한다는 內容이다.

「바르. 그로미코」案에 基礎하여 1970年 8月 12日 「모스크바」에서 條印된 獨蘇不可侵條約은 本條約 및 두個의 附屬文書 곧 「獨逸聯邦政府가 蘇聯政府에 보내는 獨逸統一에 관한 書翰」그리고 「全獨 및 伯林에 關한 4大強國의 權利와 關連하여 西獨政府가 駐蘇, 仏, 英, 美, 各國大使館에 보낸 覺書」로 構成되어 있다.

獨. 蘇不可侵條約은 前文에서

「유엔」憲章의 目的과 原則에 立脚한 平和的協調, 兩國既存條約의 再確認, 兩國間의 經濟, 科學, 技術, 文化關係를 包含한 協調와 關係改善의 實現을 強調하고

第1條는 國際平和와 緊張緩和, 歐洲事態의 正常化와 平和的關係의 發展鼓吹, 歐洲의 現存事態를 始發點으로한 協商增進을 企圖한다고 規定하고

第2條는 紛爭의 平和的解決 및 武力不行使宣言을 規定하고

第3條는 歐洲平和를 위해 現存國境線을 認定하고 「오델. 나이제」線 및 東西獨國境線을 包含한 모든 歐洲諸國의 國境線은 不可侵이며

第4條는 本條約은 兩側의 모든 既存條約에 抵触되지 아니하며

第5條는 批准書交換당일에 發効한다고 規定하였다.

그리고 統獨에 관한 書翰에서 西獨政府는 이 條約이 統獨成就를 위한 獨逸國民의 自由로운 意思와 相反되지 않음을 밝히며, 3大國에 보낸 西獨政府 覺書에서 獨.蘇兩國은 獨.蘇不可侵條約이 美.英.仏3個國의 全獨 및 伯林問題에 관한 權利와 責任에 影響을 두지 않으며 또 이 問題를 論議하지도 않았음을 通告하는 內容이다.

前文에서 獨.蘇兩國이 取한 過去의 諸措置 및 既存條約 特히 1955年 9月 13日締結된 國交正常化條約을 再確認한 것은 이에 包含된 書翰 곧 西獨은 統獨의 權利를 갖는다는 當時 「아데나워」首相이 「볼가딘」蘇聯首相에게 보내는 書翰內容이 아직도 有効함을 再確認한 것으로써 西獨의 平和的인 手段에 의한 統一可能性을 開放하여 놓았다.

그러나 第1條에서 規定된대로 現存事態를 出發點으로한 이상 統獨의 可能性이 實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第1條의 歐洲事態의 正常化와 平和的인 關係의 發展鼓吹는 그동안 蘇聯이 主唱해 왔던 全歐洲安保會議開催推進에 合意한 것이며 本條約締結의 蘇聯側最大目標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評價되고 있는 實情이므로 本條約締結을 契機로 歐洲安保會議추진은 本格化되었다.

第2條의 武力不行使宣言으로 「유엔」憲章 第53條 및 第107條에 의하여 蘇聯이 保有하여 왔던 對獨武力介入權 곧 「敵國條項」이 失効되었으므로 西獨은 비로서 同等한 立場에서 蘇聯을 接觸할

地位를 回復하였는바 이것은 西獨側이 거둔 最大의 成果이다.

第3條에서 現存歐洲國境線을 “尊重” “不可侵”이라고한 表現은 當初 “承認” 및 「움직일수없다」는 表現에서 一步後退한 것으로서 平和的手段에 의한 國境線의 變更可能性을 남겨두었고 統獨可能性을 남겨둔 前文과 함께 西獨側의 主張이 反映된 것이지만 一応 現存 國境線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事實上 東歐에 對한 蘇聯의 干涉權을 宣言한 「브레즈네프 . 독트린」에 西獨이 同意한 結果를 찾아온다.

그리고 條約前文에서 間接적으로 言及한 統獨을 위한 獨逸民族의 自決權保有問題를 西獨政府가 蘇聯政府에 보내는 統獨書翰에서 再強調한 것은 外見上 西獨側의 主張이 反映된 것으로서 보이지만 實際로는 그拘束力이 疑問視되는 附屬文書에 明記하므로써 東獨의 反발을 무마하고 한편으로는 西獨社民黨政權의 國內政治의 立場을 考慮하여 許容된 극히 政治的인 文書形式이므로 그 具體的 實効性의 否는 장차 獨 . 蘇關係의 現實的인 狀況展開에 따라 解釈이 될 것이다.

蘇聯條約의 締結은 歐洲의 戰後 冷戰構造解消를 가져온 歷史的 事件으로 評價되고 있거니와 政治 軍事 經濟 各分野에 걸쳐서 廣範圍하고도 長期的인 影響을 歐洲와 나아가서 國際政治에 미칠 것이다 軍事的側面에서 歐洲를 中心으로 東西冷戰關係의 全般的인 解消傾向이 보다 뚜렷한 進展을 보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나토」와 「바르샤바」條約軍間의 相互 減軍可能性이 具體化될 것이며 「나토」에서의 美軍減軍論議가 보다 빨리 現實化되어 西獨의 軍事負擔이 增大될 것이고, 戰略武器制限會談의 進展을 促求하고 歐洲安保會談의 召集時期가 短縮될 것이고 西部後方地帶(歐洲)의 軍事的安定을 期하

게된 蘇聯은 장차 있을지도모를 中共과의 對立過程에서 有利한 地位를 確保함과 동시에 아시아集團安保體制創設, 地中海 및 印度洋에의 進出등을 서두를 可能性이 增大되었다.

政治的側面에서 「經濟的巨人이나 政治的으로는 小人이었던 西獨이 이제 政治的으로도 巨人化하기 始作했다」는 歐洲諸國의 一般與論과 같이 歐洲政治에 있어서 西獨의 政治的發言權도 強化될 것이다. 한편 東歐에서는 獨蘇不可侵條約締結을 青信号로 그동안 進行되어 왔던 西獨 - 「폴란드」間國交正常化條約 기타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등과의 國交正常化條約이 곧 締結될 것으로 予想되고 있으며 西獨과 東歐諸國과의 交涉 및 交流가 漸次增大됨에 따라서 東歐情勢가 流動化될 可能性도 全然 배제할수 없다. 즉 戰後 西獨의 報復主義를 抑制하기 위해서 東歐의 團結 및 蘇聯의 後見이 必要하다고 내세워 東歐事態에 積極介入해왔던 蘇聯의 立場이 그 名分을 잃게되어 東歐의 團結이 西歐와의 活潑한 接觸可能과 더불어 弱화될 징후도 없지않은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經濟的側面에서 經濟, 科學, 技術協力を 強調한 條約 前文 그대로 新經濟計劃實施이래 經濟成長率이 鈍化되어 이를 打開하기 위해 歐洲共同市場最強「멤버」인 西獨의 經濟力과 技術協力を 切實히 必要로 하고 있는 蘇聯과 傳統的인 海外市場인 東歐를 回復하려는 西獨의 經濟的必要가 合致되어 獨.蘇條約締結을 계기로 우선 西獨과 蘇聯 및 東歐諸國과의 經濟, 科學, 技術交流가 急速히 增大될 것이므로 因하여 지금까지 對蘇對東歐貿易에서 首位를 찾아하여왔던 仏蘭西가 적지않은 打撃을 받게될 것이고 仏蘭西는 西獨에 對한 對抗

力으로써 既存政策을 脫皮하여 英國의 歐洲共同市場加入을 促求하였던 것이다.

獨·蘇不可侵條約締結을 契機로 보다 明白히 된 歐洲의 冷戰解消와 共存「무-드」의 膨배는 「유엔」및 아시아各國에도 相當한 影響을 미치게 될것인바 強硬反共外交를 柔軟反共外交로 修正하지 않을수 없었던 一般的인 國際環境의 分위기를 보다 加速시킬것이다. 그리고 西部後方地域의 緊張緩和와 安定化에 成功한 蘇聯은 앞으로 中共을 主對象으로한 아시아地域에 보다 注力할 可能性이 있고 「아시아」集團安保論實現은 위하여 積極的外交攻勢를 展開할것이다. 다만 對中共問題에 있어서 蘇聯은 現在 以上으로 關係惡化를 시키지 않는 方向으로 努力하게 될것으로 보이며 北傀의 武力挑發에 對하여서도 이를 沮止하는 方向으로 努力하게 될것이고 이로써 韓半島에서도 美·蘇協調에 의한 緊張緩和政策이 지속될것이다.

(2) 「노엘·나이제」國境線問題

獨逸과 蘇聯의 中間地域에 位置한 「폴란드」는 그 地政學的 位置때문에 歐洲政治史에 있어서 恆常 戰爭의 傷痕을 씻지못하였다. 獨逸間政治的「잇슈」인 「폴란드」西部國境線의 複雜微妙한 性格에 關하여 西獨政治指導者로서 새로운 態度表明은 相當한 難題로 看做된다.

「브란트」首相의 東方政策의 鞏固한 礎石定立은 「오델·나이제」國境線으로 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獨·蘇條約과 獨逸條約은 불가결의 連關性을 갖고 있으며 東方諸國의 對西獨政策의 包括的轉向을 의미한다. 「브란트」西獨首相은 現實認定

의 政策的意味에서 「오델·나이제」國境線存在을 承認하였는바 東方 諸國으로 부터 환영을 받는 대신 國境線認定이 곧 統一의 保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國內政治的側面에서 失鄉民을 비롯한 強硬保守論者로 부터 非難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短期的眼目의 評價보다는 凍結되어 가던 統一外交論議에 溶解劑를 投入하여 現實變化를 志向하는 長期的眼目에서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오델·나이제」線은 第二次世界大戰後 獨逸領土인 東部「푸러시아」를 蘇聯이 併呑하고 東部の 「폴란드」領土대신 西部의 獨逸領土의 一部를 「폴란드」에 報償해 줌으로써 劃定되었다. 「오델」江은 「체코」, 「폴란드」國境附近에서 始源하여 주로 「폴란드」領 「씨레시아」地域을 橫斷하여 西方으로 흐르면서 「체코」北部地域에서 부터 풀러내리는 「나이제」江과 合流하여 北上, 「스테틴」을 거쳐 「발틱」해로 이어지고 있다.

全長 903 km에 達하며 1919年 「베루사이유」條約에 따라 國際 河川으로 되었으며 거의 全部가 航行이 가능하다. 1945年 「포츠담」協定은 이 두河川以東에 位置한 舊獨逸領土를 「폴란드」領化시키고 이 地域에 居住하고 있던 獨逸人을 追放시키는 送還計劃을 樹立實施하였다. 그리고 1950年 東獨과 「폴란드」는 「오델·나이제」線을 獨波間의 最終的國境線으로 確定하는 條約을 締結하였다. 한편 「基民黨」西獨政府는 「폴란드」協定條項은 暫定條項이며 全獨政府構成後에 獨波講和條約을 통하여 國境線問題의 解決을 固執하고 內心 東·西獨 統一의 交換條件으로 삼았다. 이리하여 「할슈타인」政策과 더불어 「오델·나이제」國境線不認定의 強硬路線은 「힘의 政策」으로 대변되

있고 「폴란드」를 비롯한 東方諸國으로 부터 西獨이 失地回復을 위한 某種의 陰謀를 睥睨할것이라는 疑心을 갖게하였다. 「브란트」西獨首相은 東歐圈의 對獨不信感의 分解作業으로서 「오렐·나이제」國境線에 대한 現實主義的立場을 攄하게 된것이다. 다만 戰後世代로서 「오렐·나이제」江地域에 居住하고 있는 「폴란드」國民은 故鄉取得權을 갖으며 獨逸失鄉民의 復歸權도 認定되어야 되기 때문에 「브렌트」西獨首相은 “「오렐·나이제」國境線認定은 講和條約締結時까지 暫定的으로 公式化할 수 있다”는 但書を 부치고 있다. 이와같은 西獨의 立場은 獨·蘇不可侵條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條約第3條에서 規定한 現存歐洲國境線의 認定은 事實상 對東歐干涉權限을 宣稱한 「부레즈네프·독트린」에 西獨이 同意한 結果로 評價되나 「그로미코」案에서 「全國境線의 承認」或은 「움직일수 없다」라고 表現되었던 것이 本條約에서는 尊重 或은 不可侵이라고 훨씬 軟化된 表現으로 바뀐것은 統一可能性을 留保한 前文및 統一에 관한 附屬文書와 함께 平和的手段에 의한 國境變更可能性의 餘地를 남겨놓은 것으로 解釋된다. 그러나 「브란트」西獨首相의 國境線問題에 대한 基本立場은 만일 歐洲의 安全保障體制가 確立되어 平和秩序를 創造하려고 決心한다면 더이상 過去의 國境線問題에 억매일수 없다는 것이다.

(3) 統 獨 論

西獨政府는 1950年3月22日 獨逸統一의 手段으로서 占領國委員會 或은 「유엔」監視下의 全獨逸自由選舉의 實施를 提唱하였다. 이와 같은 西獨政府의 要望에 따라 西方側三國이 「유엔」事務總長에 대하여 全獨自由選舉實施의 前提條件을 調査할 國際委員會設置에 관한

事項을 議事日程에 넣을 것을 要求한 結果 第6次 「유엔」總회는 1951年12月20日 45:6의 可決로 全獨自由選舉를 위한 「유엔」總會監視委員團을 獨逸에 派遣키로 決定하였으며 同決議에 따라 派獨되었던 同委員團은 1952年3月15日부터 23日까지 西部獨逸에서의 自由選舉분위기를 確認한 後 蘇聯占領地域에 入境하려 하였으나 蘇聯側의 拒否로 挫折되고 말았다.

1954年の 伯林4大国外相會談(1月25日-2月18日)에서 西方側은 西獨이 앞서 提議한 方案과 本質적으로 同一한 所謂 「이든·플랜」이라고 불리는 5段階式 統獨方案을 提示하였으나 蘇聯은 이를 拒否하였다. 五段階式統獨方案은 (1) 全獨自由選舉實施 (2) 選舉結果에 의한 國民議會의 召集 (3) 國民議會에 의한 全獨逸國憲法의 制定 (4) 全獨政府의 樹立 (5) 全獨政府와의 平和條約締結을 骨者로 하고 있다.

이 期間中 統獨方案을 둘러싼 東西間의 論爭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即 西方側의 主張은 「이든·플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먼저 自由選舉를 實施하여 全獨議會를 構成하고 憲法을 制定함과 아울러 全獨政府를 樹立하여 講和條約을 締結케 하자는 것이고 이에 反하여 蘇聯은 自由選舉를 實施하되 獨逸이 먼저 對獨戰爭에 參加한 어떠한 一國을 敵으로 하는 聯立關係 또는 軍事同盟에도 加担하지 않는다는 條件下에 軍事의地位의 決定을 先行시켜야 함을 主張하였다. 이후 蘇聯은 1954年10月23日 西獨의 占領終結, 主權回復 및 「西歐聯合」加入을 認定하는 「파리」條約의 締結이 全獨自由選舉를 不可能케 만들었다는 理論的 根拠를 提起하

여 자유選舉案을 撤回하고 獨逸人民을 煽動하므로써 獨逸自身の 中立化를 企圖하는 方向으로 對獨政策을 轉換시켜 對西方強硬條件을 提起하기 始作하였다.

1955年7月の 「제네바」四大陸首腦會議과 同年 10月11日에 開催되었던 4個國外相會議에서 蘇聯은 「獨逸에는 이미 두個의 相異한 國家가 存在함으로 獨逸의 統一은 오직 이 두 政府의 直接交涉에 의하여 漸進적으로 達成되어야 한다고 主張함으로써 西方側의 自由選舉에 의한 統獨案을 拒否하였다. 그리고 蘇聯은 1955年9月20日 東獨의 主權承認에 관한 條約을 締結하여 東獨地位의 堅固化를 꾀하는 한편 東獨政權으로 하여금 駐獨全外國軍의 撤收를 前提로 東西獨間의 直接協商을 통한 東西獨聯邦案 或은 東·西委員會 設置案을 提起케하였다.

이 동안 西獨은 統獨의 實現은 聯合國들의 道德的政治的責任임을 強調하고 民族自決原則에 의한 全獨自由選舉를 계속 提唱하였다.

勿論 이 期間中 「힘의 政策의 一環으로써 採択된 西獨軍核武裝案은 國內의 統獨論議를 原子戰爭에 관한 論爭으로 轉換시킨 感을 주었고 「함프리」案 - 「조지·케닌」案 - 「이든」案 - 「라파키」案 등의 系譜를 가지는 所謂 中歐非武裝地帶設置論은 獨逸에 있어서의 緊張緩和를 모색하는 方案을 中心으로 國際的論爭을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獨逸統一이 1954年10月の 「파리」協定에 嚴格히 規定된 바 4大陸의 義務라는 論理的基準과 「自由와 平和속의 統一」이라는 大原則은 全國際與論의 支持를 받았다. 또한 前記 「파리」協定締結 當時 西獨은 이미 統一의 手段으로서 武力을 行하지 않을 것을

約束하였기 때문에 西獨에서는 武力統一論은 存在하지 않는다.

다음 1959年 5月 「제네바」 4個国外相會議當時 美國務長官「허터」에 의하여 西方側의 本格的인 統獨方案이 最終적으로 提起되었다. 이 「허터·플랜」은 32個項으로 構成된 4段階式統獨方案으로서 當時 西獨政府의 지지를 받은 案이다. 이 案은 第一段階에서 伯林市의 自由選舉에 의한 統一을 成就하고 第2段階로 獨逸兩個地域間의 技術的 接觸의 協調와 擴大, 往來의 自由 및 人權保障, 中立的인 監視下의 普通 秘密自由選舉를 위한 選舉法의 起草등 義務를 가지는 全獨混成委員會를 構成하며, 第3段階에서는 國民投票에 의하여 確定된 選舉法에 의한 全獨議會를 選出하며 全獨憲法을 起草成案하고 第4段階에서 獨逸의 統一및 全獨政府와의 平和條約締結을 實現시키는 案이다. 이 案은 蘇聯및 東獨에 의하여 拒否되었으나 西方側은 이를 正式으로 파기하지 않았으며 西獨도 이에 對한 支持를 公式으로 撤回한바 없으므로 앞으로의 統獨論議를 위한 基礎로 남아있다. 사실상 1964年 1月과 1965年 4月에 「워싱턴」에서 開催되었던 美·英·仏獨 4 大國大使級實務者會議에서도 동일한 원칙 밑에 獨逸의 統一問題가 論議되었다.

이 상과 같이 美蘇는 統獨問題解決의 方途를 東·西間의 勢力均衡을 깨트리지 않고 歐洲의 安全을 凶謀하는 範圍內에서 모색하여왔을뿐만 아니라 獨逸國民이 願하는 統一自体에 焦點을 두지 않고 統一結果가 어느쪽에 有利하고 不利한가에 두고 있기때문에 相互無數이 주고받은 統一方案은 피차간 受諾할수 없는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再武裝한 統一獨逸의 去就는 東西勢力均衡의 저울질을 左右하는 決定的 要因이기

때문이다. 또한 西獨이 民族自決原則에 立脚한 自由選舉를 統獨의 前提條件으로 내세우고 있는것이나 東獨이 두 獨逸政府間의 直接協商을 前提로 하는 東·西獨聯邦制를 主張하고 있는것은 모두 相對便의 基本政策을 拋棄하라고 強要하는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1966年初부터 對東歐平和攻勢를 展開한 바있는 「에르하르트」西獨政府는 1966年 3月 25日 當時 世界 115 個國에 冷戰緩和와 獨逸問題의 確定을 提議하는 7 個項의 「平和覺醒」를 發表함과 아울러 1966年 4月 29日 6 個項의 「統一白書」를 發表하여 獨逸國民의 自決要求는 統獨政策의 바탕인 동시에 그 核心임을 強調하였다. 이후 美·蘇間歐洲緊張和政策和 때를 맞추어 統獨問題에 관한 多元的인 國內論議가 展開되었다. 「브란트」社民黨黨首는 聯邦首相全獨相, 外相및 伯林代表로 構成되는 「獨逸理事會」를 設置하여 獨逸統一努力을 集中的으로 遂行하자는 「獨逸理事會」의 設置를 提議한바 있으며, 「바르젤」基民黨院內總務는 1966年 6月 17日 「뉴욕」에서 (1) 蘇·東獨間의 20年 期限附通商條約承認 (2)統一獨逸內의 蘇聯軍駐屯權 認定 (3)4 大國代身全獨專門委員會를 設置하여 統一方案을 講究 (4)西方 三大國과 西獨은 統一研究를 위한 實務者團의 設置 (5)西獨에서의 共產黨合法化를 內容으로 하는 異色的統獨論을 提起하였으며 1966年 7月 6日 當時 副首相兼 全獨相이며 自民黨黨首인 「멘데」의 「할슈타인·닥트린」의 非現實性에 관한 宣言, 「베너」社民黨議員의 「獨逸經濟共同體案」과 「東獨政權不承認方針의 再考論」이 提起되었다.

1966年 10月 5日 「베너」社民黨議員은 獨逸經濟共同體案에서 (1)東西獨間에 經濟共同體를 構成하므로써 統一의 第一段階를 構築하고

(2)西獨은 東獨의 石炭不足量을 補充해 주며 (3) 東·西獨間의 貨幣 價值를 統一하고 (4)東·西獨內貿易量을 增大하며 東·西獨各全獨相의 公式的接觸을 通하여 統一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한편 統獨에의 새로운 活路를 打開코저 1966年 12月 1日 登場한 「키싱거-브란트」大聯立政府는 對東獨關係改善내지 接觸擴大策의 具體的實踐方案을 1967年 4月 12日의 聯邦下院本會議에서 다음과 같이 聲明하였다. (가)西獨國民의 日常生活에 대한 便宜圖謀措置로서 (1)相互 施行의 自由擴大 특히 觀光旅行의 獎勵 (2)伯林 및 西獨隣接地域間의 通行証約定의 締結 (3)兩地域間支払決裁의 容易化 (4)醫藥品 및 膳物授受制限의 撤廢 (5)兒童을 包含하는 家族의 再會 (나)經濟的 通信的分野의 協力增進策으로서 (1)借款條件을 包含하는 獨逸內貿易의 伸張과 促進 (2)西獨電力및 「에너지」市場의 交換과 合理化된 共同 電力經濟의 回復 (3)橋梁道路 運河, 鐵道등 새로운 疎通機關의 共同 建設과 復舊 (4)全伯林市의 電話連絡을 包含하는 郵便 및 電信網의 改善 (5) 共同關心의 經濟的技術的協調機關에 관한 協議 (다)科學, 技術, 文化交流에 관한 協調로서 (1)大學, 研究所 및 研究團體間交流의 制度化 (2)科學的, 技術的協力の 適切한 方法의 研究 (3)書籍, 新聞, 雜誌解脫制限의 漸進的解除 (4)青年團體및 學生團體의 相互訪問 (5)文化團體 및 機關의 自由로운 交流를 제안하였다. 「키싱거」首相의 이 提議는 國際政治的의 條件과 東·西獨間異質的社會體制의 固定化로서 東西獨統一이 不可能한 現實을 認定하고 東·西獨交流를 통한 段階的 現實的接近方法으로서 「브란트」西獨首相의 統獨觀과 基本的으로 같은 立場에 있다.

「브란트」西獨首相의 統獨政策은 다음과 같은 理論的展開위에서 成立되고 있다.

첫째 東獨을 「事實上的 國家」로 認定하고 있다. 東獨承認論은 1966年西獨大聯政期를 前後하여 「저널리즘」과 學界의 一角에서 부터 台頭되기 시작하여 1972年5月12日 東·西獨通行에 관한 最初의 國家協定締結段階에 까지 發展하므로써 東獨을 「事實上的 國家로 承認」하고 있으나 西獨은 1970年3月과 同年5月の 「에어 프르트」와 「캄셀」의 東·西獨頂上會談에서 明白히 된 바와같이 基本的으로 東獨政權에 대한 法的承認을 하지않고 있다. 西獨이 東獨을 國際法的으로 承認을 하지않은 理由는 國際法的承認에 의한 東獨의 國際的地位의 高揚을 견제하려는데 第一次의 目的이 있겠으나 가장 基本的的要因은 東獨을 國際法的으로 承認할 경우 獨逸의 分斷을 固定化시키는 結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브란트」西獨首相은 東獨을 事實上國家承認한 結果로서 西獨의 與黨인 「社民黨」과 東獨의 執權黨인 「社會主義統一黨」指導者間의 對等한 立場에서 東·西獨間의 諸般問題에 관한 交渉을 추진할用意가 있음을 表明하고 있으며 東·西獨間의 現存競界線을 認定하고 있다. 특히 「오렐·나이제」線에 관한 西獨의 特殊한 立場은 앞서 指摘한 바와 같다. 그리고 東·西獨間의 相互關係를 規制하는 一般條約을 締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現在 東·西獨實務者間에는 이 條約을 締結하기 위한 交渉을 進行시키고 있는 中이다.

둘째 「브란트」西獨首相은 東·西獨關係를 定立하기 위하여 「單一民族內의 2個獨逸國家概念」을 도입하고 있다. 이 「單一民族內

의 2個獨逸國家概念」은 한편으로는 東獨에 대한 事實上國家承認概念의 發展이며 또다른 한편으로는 東·西獨統一의 不可能을 認定한 現實認정의 政策的概念인 것이다. 「브란트」首相은 東·西獨間의 關係는 一般國際法上의 國家對 國家間의 關係가 아니며 이른바 「特殊한 關係」에 있다고 規定하고 1970年「캄셀」의 東·西獨頂上會談에서 提示한 東·西獨關係說定을 위한 20個項目에서 東·西獨은 長官級의 專權代表를 任命하여 相互關係를 調整하자고 提議하고 있다. 「브란트」西獨首相은 또 「單一民族內의 2個獨逸國家概念의 發展으로서 東獨과 第三國과의 關係維持를 認定하고 있다. 現在 東獨承認國은 29個國으로서 이中 半以上이 非共產系國家이다.

그리고 東·西獨의 同時 「유엔」加入을 認定하고 있다.

세째로 가장 重要한 問題로서 「브란트」西獨首相은 東·西獨接近 내지 統獨의 段階的實現을 主張하고 있다. 東·西獨은 第一段階로서 相互共存段階를 거쳐 第二段階에서 東·獨을 結合하는 「共同社會」를 形成한다는 것이다. 東·西獨은 相互共存段階를 통하여 非政治的 經濟的 내지 政治的 交流를 強化할 경우 상당한 時間이 경과하면 獨逸民族文化를 基盤으로 한 社會, 文化的共同社會가 形成되며 이때 政治的統一의 條件이 形成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統獨論은 現實認定으로 부터 출발하는 合理的理論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積極的인 統一政策을 外面하는 것이라 評할수 있다.

才 三 章 結 論

附 錄 三 表
表 三 表

第 三 章 結 言

가. 韓獨兩國의 統一與件比較

最近 韓國에 온 一部 美國學者들의 見解나 美國의 言論과 「닉슨」·周恩來의 北京 共同聲明을 通해 「두개의 韓國」이라는 「現實」 즉 現狀으로 부터 出發하는 韓半島에 있어서의 緊張緩和가 특히 美國의 政策으로 表示되었다는 點에서 現在의 南北韓間의 關係를 國際政治的與件에서 볼 때 東·西獨間의 경우와 一部 類似性을 內包하고 있다.

특히 「7.4 南北韓共同聲明은 비록 法的拘束力을 갖인 條約은 아닐지라도 歐洲의 冷戰體制의 終幕을 갖어온 獨蘇不可侵條約(1970年 8月12日假條印 - 1972年 5月17日 西獨議會批准)의 戰爭拋棄條項이나 現在 東西獨間에 論議되고 있는 一般條約이 包含하는 內容을 同時에 內包하고 있다는 點에서 특히 注目할만 하다.

즉 東·西獨의 境遇는 非政治的 接觸, 經濟的接觸段階를 거쳐 政治的接觸段階에 突入하고 있지만 南北韓의 境遇는 비록 南北赤十字會談을 통한 非政治的接觸이 先行되었다고는 하나 基本的으로는 政治的接觸을 먼저하고 非政治的 經濟的接觸을 하는 逆順序的 接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東西獨接觸의 경우에서 予總할 수 없는 특히 國內政治的 問題性을 內包하고 있다.

다만 強大國의 現狀維持政策과 韓獨問題는 韓國人 自身이 解決할 수 있는 그리고 自身이 解決해야할 問題로써 提起되었다는 點에서

는 東·西獨의 境遇와 類似性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展開될 人道的 社會文化的 經濟的 問題등 非政治的 問題와 政治的 問題에 있어서의 南北韓接觸은 第2次大戰後 27年間 接觸의 經驗을 갖인 東西獨間의 接觸過程에서 歷史的 教訓을 發見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韓·獨兩國間에는 重要한 統一條件의 差異點이 있음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

(1) 歐洲은 緊張緩和政策을 推進할 수 있는 前提로서 東·西歐 「뿌력」間의 勢力均衡으로 體制의 安定이 現實的으로 確保되어 있다. 政治·經濟·軍事的 勢力均衡은 勿論 兩「뿌력」間 勢力國의 境界線이 確定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軍事的側面에서 核戰爭의 危脅可能性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것은 軍事的衝突可能性이 거의 없음을 意味한다.

뿐만아니라 歐洲에 있어서는 緊張緩和政策을 推進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要因으로서 産業國家團으로 發展한 歐洲에서는 所謂 「南北問題」가 그 自體內에서 「크로즈·업」되지 않는다는 點이다. 歐洲國家의 國內社會體制面에서 볼 때는 所謂 「平準化된 中産層社會」, 政黨들의 脫「이데오로기」化, 傾向에 따른 「이데오로기의 終末」즉 多元的民主主義理論이 制度的인 면에서나 現實的인 면에서 커다란 問題를 提起하지 않을 程度로 社會的 安定化가 維持되고 있다.

이와 反對로 韓半島의 境遇는 그렇지가 못하다. 極東地域은 東西「뿌력」間의 政治的 經濟的·軍事的 勢力均衡體制가 未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社会体制의 安定性도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어 緊張緩和 政策 追求의 條件이 不安定한 狀態에 있다. 極東地域은 朝蘇·朝 中軍事同盟體制를 基盤으로한 共產「뿌력」과 自由陣營의 韓·美相互 防衛條約과 美·日安保條約의 三角防衛同盟體制間에 條約上의 軍事的 均衡이 表面的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듯 하나 日本의 對韓政策 (軍事的側面)은 아직 未知數이며 특히 極東地域에 있어서 政治的 經濟的側面의 國際協力現狀은 極히 初歩的階段에 있다. 따라서 歐洲의 경우와 같은 政治的·經濟的 및 軍事的國際協力體制 間의 相互均衡에 의한 緊張緩和要因은 極東地域에서는 아직 形成되 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國際協力體制의 背景이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緊張緩和政策에 따라 極東地域에서는 「南北問題」가 拾頭되어 民族國家의 利害關係追求와 더불어 「이테오르기」의 政治的·社會的 機能이 問題될 수 있기 때문에 所謂「이테오르기」의 終末理論과는 다른 次元의 緊張要因이 提起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이것은 所謂 反植民主義 또는 「解放戰爭」論이 現實적으로 作用할 수 있는 可能性이 完全히 喪失되지 않았다는 點이다.

(2) 西獨은 그의 莫大한 經濟力을 背景으로 緊張緩和政策을 主體的으로 追求하여 歐洲의 現狀維持政策을 표방하고 있는 蘇聯과 外交關係를 獨立하였으며 最近에는 獨蘇不可侵條約을 締結하고 東歐 諸國과도 關係正常化를 維持하여 緊張要因을 大幅 緩和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東歐諸國과의 關係正常化를 追求하는 安保의 지렛대로

西歐로 부터의 美軍撤收를 留保시키기 위해(이는 「브란트」에 의하면 緊張緩和政策의 主要手段임) 스스로 「나토」의 軍費支出을 分担하고 다시 P.P.C의 拡大를 通해 西方과 의 協調를 強化시키면서 東獨과의 關係 正常化를 追求하고 있다.

이에 比하여 韓半島の 경우 共產黨과의 外交關係樹立은 상당한 時間이 必要하게될 것이다.

(3) 東·西獨間 「技術的인 問題에 關한 合意」는 '東獨不承認政策을 採択한 동안에도 可能하였고 兩獨間 經濟交流과 非政治的交流은 存続되어 왔다. (勿論 緊張強化時 一時 交流가 中斷된 적도 있었음) 西獨의 경우, 東獨과의 經濟交流은 兩獨間非政府「레벨」의 接觸媒介體維持라는 點에서 뿐만 아니라 東獨의 柏林措置를 비롯한 統獨問題, 兩獨交流問題등 政治的인 問題解決을 위한 手段으로서의 重要한 對東獨「차별」役割을 하였다.

이에 比하여 南北韓의 경우는 戰後 27年間 거의 接觸媒介體가 維持되어오지 못하였다.

(4) 東獨의 對西獨戰略概念은 諒解의 現状凍結政策의 範圍內에서 西獨에 依한 東獨의 國家承認獲得에 執着하여 國際法的인 承認내지 東西獨의 即時 「유엔」加入 申請을 要求하므로서 彼略目的이 現在로서는 大體로 確定되었음에 反하여 北韓은 「國際法上的인 承認」要求를 提起치 않는 代身 「南北韓의 平和協定締結」을 要求할 뿐만 아니라 政黨社會團體間의 對話는 勿論 非政治的인 接觸내지 「南北聯邦案」 「南北朝鮮 政治協商」등 南韓赤化를 위한 無差別的인 戰略

的 要求를 提起하고 있다. 즉 東獨과 北韓과의 戰略概念은 基本的으로 相異하다. 또 獨逸의 경우 西獨이 「自由往來」를 主張하고 東獨이 政治的統制는 勿論 現存하고 있는 狀態下의 東·西獨間 往來를 主張하고 있는데 반하여 韓國의 경우는 立場이 相異하다.

(5) 西獨의 統獨政策은 敗戰國으로서의 同一性理論으로 부터 그의 「單獨代表權」을 理論化하였기 때문에 民族自決權을 強調해 왔으나 韓國의 경우는 그 唯一合法性을 「유엔」決議에서 導出해 왔기 때문에 특히 「유엔」의 中共加入을 契機로 促進될 構造的 變化가 問題示되고 있다.

(6) 그리고 國內政治에 있어서의 基本的 差異點은 西獨은 冷戰思想이 現執權勢力에 의해 克服될 수 있는 條件下에 있으나 韓國의 경우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點이다.

나. 問題點 및 對策

이상과 같이 東·西獨과 南北韓의 統一與件은 基本的으로 相異하다. 그러나 南北赤十字會談과 「7.4 南北聲明」등으로 分斷國의 直接 交涉과 接觸에 의한 統一問題의 解決이 要請되고 있는 現實은 同一하다. 따라서 東西獨接觸의 歷史的經驗은 우리에게 唯一無二한 善敎訓이 된다.

東西獨接觸의 經驗을 通하여 다음과 같은 問題點과 對策을 提示한다.

(1) 東西獨은 戰後 27年이 經過하는 동안 各者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異質的社會體制下에서 政治的으로 極히 安定化 되어 있다. 이것은 東西獨接觸의 政治的 基盤이다.

따라서 南北韓間에 本格的인 統一論議 및 南北接觸의 第1次的인 基盤은 國內政治의 安定이다.

(2) 東西獨은 各者 自由共產國內에서 有力한 經濟國家로 成長하였다. 西獨의 經濟力은 再論할 必要가 없거니와 東獨도 특히 1960年代 以後 東歐共產國內에서 蘇聯다음의 經濟的實力을 培養하였다. 東獨이 西獨의 東方政策에 積極的으로 呼應할 뿐만 아니라 本格的인 接觸方策을 提示하는 裏面에는 共產體制的 政治的安定뿐만 아니라 突은 이와 같은 經濟力을 背景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東西獨接觸의 經驗에 비추어 볼 때 經濟的安定은 統一論議 및 南北接觸의 불가분의 要件이다.

即 統一論議의 經濟的基盤이 確立되어야 한다.

(3) 西獨의 東邦政策의 背景에는 「나토」의 軍事的 支援이 있을 뿐만 아니라 蘇聯의 對歐洲緊張緩和政策이 밑받침되고 있다.

특히 獨蘇·獨波不可侵條約이 締結된 現時點에 와서는 西獨은 東歐側의 軍事的挑發可能性을 完全히 排除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와 反對로 極東地域은 美·日·蘇·中共의 미묘한 勢力關係가 作用하고 있으므로 安保에 對한 國際的保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北韓의 獨自的 挑發可能性은 常存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韓接觸은 以上과 같은 條件에서 安保問題를 念頭에 두

고 展開되어야 한다. 즉 統一論議의 國際的基盤을 考慮하여야 한다.

(4) 西獨은 現段階로서는 東獨을 "事實上承認"하고 이미 東·西獨通行에 관한 一種의 國家協定도 締結하였으며 現在 相互關係를 規制하는 東·西獨一般條約을 論議中에 있으나 東獨을 國際法的으로 承認하는 것을 決코 反對하고 있다.

東獨을 國際法的으로 承認할 경우 東獨의 國際的地位를 向上시킴으로써 西獨의 對外關係에서 問題點이 提起될 뿐만 아니라 東·西獨分斷을 國際法的으로 固定化시키는 結果가 되어 東西獨統一의 可能性을 永遠히 喪失한다는 것이 東獨을 國際法的으로 不承認하는 理由이다. 그러나 한편 西獨은 東獨과 第三國과의 外交關係樹立을 認定하고 東·西獨의 「유엔」加入을 贊成하고 있다.

이것은 政策轉換에서 提起되는 과도적인 外交的 國際法的 마찰현상이다.

이상과같은 東·西獨接觸의 經驗에 비추어 南北韓接觸이 擴大될 경우에도 北韓을 國際法的으로 承認하여서는 안되며 東·西獨關係를 國際法上 國家對國家關係와는 다른 「特殊關係」라고 設定한 것과 같이 南北關係를 規定하는 理論的 「모델」을 開發할 必要가 있다.

(5) 東·西獨間의 政治的接觸은 具體化되고 있으나 「한 民族內의 두개 獨逸國家概念」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事實上 상당한 期間동안 獨逸分斷의 固定化를 意味한다. 따라서 現 東·西獨의 統一概念속에는 「聯邦論」등 東·西獨을 統括하는 單一政治體制

에 관한 問題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展開될 南北韓의 非政治的내지 政治的接觸은 東·西獨接觸의 類型에 類似할 것으로 展望된다. 東·西獨 類型에 따른다면 南北統一은 「共存」-「共同社會形成」-「統一의 實現」이라는 段階的過程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南北接觸에는 「聯邦論」等 北韓의 接觸段階意識을 無視한 無差別的인 戰略的提案을 단호히 배격하고 合理的이며 段階的인 接觸을 強化함으로써 南北統一의 條件을 漸進的으로 造成하여야 한다.

끝